

D-172 / 2003. 2

외국의 농촌관광 정책

- 영국, 프랑스, 독일, 대만 -

연구진 박시현
송미령
성주인
박주영
장면주

머 리 말

이 자료집은 2002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림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방향 및 방안」에 관한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자료집의 주요 내용은 본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지만 지면 관계상 본 보고서에 담지 못한 내용을 따로 정리하였다.

이 자료집은 해당국가의 농촌관광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단체의 정책 지원내용, 실제 농촌관광을 경영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법률과 그 내용, 기타 농촌관광과 관련한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그 동안의 농촌관광과 관련하여 국내에 소개된 외국 사례가 대상 국가의 농촌관광 일반현황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자료집은 외국의 농촌관광 정책과 실제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료집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최근의 현지 사정을 보다 생생하게 알기 위하여 현지 거주 유학생 또는 해당 국가의 언어가 가능한 분의 도움을 받았다. 영국을 담당한 뉴캐슬대학의 김태현씨, 프랑스를 담당한 소르본대학의 정옥주씨, 독일을 담당한 동신대학교 조진상 교수와 함부르크대학의 김정곤씨, 대만을 담당한 정정길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자료집이 이 분야의 정책 수립 담당자 및 경영자, 연구자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03.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목 차

<영국의 농촌관광 정책>

1. 영국 농촌관광 활성화 대책 및 규정 개괄	1
2. 농촌관광 경영자의 자격조건에 관한 규정	2
3. 관광업의 범위, 시설 및 행위에 대한 규정	3
4. 영국의 농촌관광 정책의 발전 단계별 개요	11
5. 농촌관광 정책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13
6. 농촌관광 정책의 시행과정 및 지역단체의 역할	15
7. 농촌관광 활성화 대책	19

<프랑스의 농촌관광 정책>

1. 농촌관광의 영역	24
2. 농촌관광에 대한 세금(Les régimes fiscaux)	31
3. 법률, 행정, 상업, 연합체 관련 규칙들	36
4. 인력 교육	47
5. 연합과 관련되는 규칙들	48

<독일의 농촌관광 정책>

1. 독일의 관광정책 개요	51
2. 독일의 농촌관광 현황과 전망	57

3. 독일의 농촌관광 담당 기관 및 단체	60
4. 사례: 독일 바이에른주의 농가민박지원정책	70

<대만의 농촌관광 정책 : 휴한농업을 중심으로>

1. 휴한농업발전계획 추진 배경	77
2. 휴한농업발전정책의 추진 과정	77
3. 휴한농업 관련 법령	81
4. 휴한농장의 설립과 경영	83
5. 휴한농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주요 지원	89
6. 휴한농업 관련기관과 조직 및 업무	92
7. 휴한농업에 대한 정부 보조	95

표 및 그림 목차

<영국의 농촌관광 정책>

<표 1> 영국의 농촌관광 숙박업의 종류	4
<표 2> 관광업 관련 규정	10
<표 3> 농촌관광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17
<표 3> 농촌관광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 계속	18
<표 4> 잉글랜드 북동부 목표 5b지역 농장관광활성화 정책	22
<표 5> 잉글랜드 북동부 목표 5b지역 농장사업지원 정책	23
<표 6> 잉글랜드 북동부 목표 5b지역 농장다각화 정책	23

<독일의 농촌관광 정책>

<표 1> 독일의 부처별 관광정책	54
<표 2> 독일의 농촌관광 숙박 형태	56
<표 3> 독일 농가민박업소 현황	58
<표 4>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 연방협의회 회원 분포 현황(2001)	62
<표 5> 주 단위의 농가민박/농촌관광 관련 단체	66
<그림 1> 독일의 농촌관광 촉진을 위한 투자 구조	54
<그림 2> 독일의 농촌관광 흐름도	59

영국의 농촌관광 정책

1. 영국 농촌관광 활성화 대책 및 규정 개괄

- 영국은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부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행한다. 이러한 지원들은 일반적으로 EU의 농촌 및 지역발전정책-목표 1, 2, 3 지역정책-과 영국의 농촌발전정책(England Rural Development Programmes: ERDP)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 그러나 EU와 영국의 정책적 규정은 각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의 범위나 방법들을 개괄적으로 언급할 뿐이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의 자격, 지원 형태, 또는 지원금의 액수 등은 각 지역의 농촌발전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는 단체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 각 지역의 농촌발전 관련 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지역사무소, 지방정부, 정부출연단체, 민간단체 등이 있으며, 이들은 영국 농촌발전정책의 큰 범위 내에서 각 지역발전 프로그램을 공동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비용에 대해서 일부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독립적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한다.
- 이러한 영국 농촌발전정책의 시행체계에서 농촌관광 활성화 프로그램도 역시 지역의 정부 및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따라서 지원 대상, 분야 그리고 자격조건도 프로그램별로 상당히 다양하다.
- 영국의 경우 농촌관광업의 창업 및 경영에 관련된 특별한 법규는 없으며, 창업 및 상거래에 관한 일반적인 법규들이 적용된다.

- 가장 기본적인 법규는 세법에 관한 것으로 모든 사업자는 창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영국 국세청(Inland Revenue)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일정한 벌금이 부과된다.
- 시설 설치 관련 사업의 경우는 “도시및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개발허가(Planning Permission)를 받아야 하며, 식품안전이나 소방시설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해야 한다.

2. 농촌관광 경영자의 자격조건에 관한 규정

- 영국은 농촌관광업을 창업, 경영하려는 자에 대해서 창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것 이외에 특별히 사전적 자격조건이나 의무규정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즉, 법적으로 농촌관광업자의 자격조건을 규제하고 있지 않다.
- 관광업을 추진하는 자가 관광시설(숙박업, 요식업 등)에 대해서 개발허가를 취득하고 식품안전 및 소방시설에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창업과 경영은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다.
- 그러나 창업의 자격요건이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관광업 즉, 숙박업이나 요식업 등에만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스포츠 등의 레저활동을 사업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 예를 들어, 199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래프팅(Rafting), 승마(Pony Trekking and Horse Riding School) 등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경우 안전관리 자격증의 획득을 의무조건으로 하고 있다.
- 농촌관광업의 경우, 본인의 주택이 농가로 구분되어 있는가 여부에 따라 농장 관광업(Farm Tourism)과 기타 관광업(Rural Tourism) 등으로 구

분되기도 한다. 이 구분은 농촌관광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농민에 대한 지원과 비농민에 대한 지원의 구분을 위해서 설정된 것이고, 일반 상거래에 관한 법규에 따르면 모두 관광업으로 포괄된다.

- 농장 관광업은 숙소의 제공뿐 아니라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음식을 취급하는 것에 따른 별도의 허가나 교육과정 이수 또는 관련 자격증의 취득이 창업에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다.
- 한편, 농민이나 기타 일반인이 관광업을 시작해서 일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등록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또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다. 즉, 관련 단체들에 가입하는 것은 전혀 의무조건이 아니며 이들 단체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다.
- 농촌관광 관련 단체들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일정한 자격 요건과 의무사항들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는 업자(회원)를 대상으로 혜택(Incentive)을 제공한다.
- 이들 각 기관이나 단체들이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관광업에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도 관광업 경영자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며 관광업의 허가 요건도 아니다. 다만, 이들이 일정한 자격증을 받거나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나름대로 경영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
- 예를 들면, 몇몇 단체에서 숙소의 시설이나 상태 등을 평가해서 등급을 주고 있는데, 이에 참여할 경우 본인의 사업체를 홍보하는 데 유리할 것이고, 또 일정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요리사 자격증 등을 획득할 경우 찾아오는 여행객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것 등이다.

3. 관광업의 범위, 시설 및 행위에 대한 규정

- 영국의 농촌관광업은 숙식을 제공하는 사업과 레저활동을 제공하는 사업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레저사업은 특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련 활동에 대한 특수한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농

4◀ 외국의 농촌관광 정책

촌지역에서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민들은 숙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데 다양한 농촌관광의 형태는 다음의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다.

<표 1> 영국의 농촌관광 숙박업의 종류

명 칭	운 영 형 태
Hot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수의 침실, 식당, 바(Bar)를 갖추고 있는 숙박시설 - 농민이 자신의 농지내에 소규모로 Hotel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
Pubs and in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프집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인 Pub을 주 사업으로 하면서 여행객들을 위한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 - 농민이 경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B&B (Bed and Breakfa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관광업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숙박시설 - 농민들이 농장내에 본인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부나 독립된 건물을 개조해서 운영하기도 함. - 숙박과 아침을 제공하며, 저녁식사를 판매하기도 함. - B&B 사업에 대한 침실수의 제한과 같은 규정은 없음.
Self-catering cott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도와 유사한 형태의 숙박시설 - 여행객이 직접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주방과 침실을 제공함. - 주방을 투숙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규모도 있음. - 농민 등이 농장내의 독립된 건물에 주방과 침실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부를 개조하는 경우도 있음. - 주로 1주일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최근 그 수가 늘어나면서 2박 정도로도 사용이 가능함.
Farm accommod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자신의 농장내에 설치하는 B&B와 Self-catering cottage를 포함하는 명칭
Host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실보다는 침대를 제공하는 숙박시설. 즉, 한 침실에 최소 2-3명의 투숙객이 숙박을 함. 가족용 침실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 아침이나 저녁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함. - 농민들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인 형태는 아님.
Camping si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텐트를 사용하는 여행객을 위한 시설 - 장소 제공과 함께 주변에 세면, 주방, 전기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 농민들이 농장내에 시설을 설치하기도 함.
Caravan pa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들의 Caravan을 갖고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장소와 세면, 전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와 Caravan을 설치하고 여행객에게 임대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음. 통상 두 가지를 겸하는 경우가 많음. - 농장내 설치를 위해서는 토지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함.

- 관광업 경영자에 대한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지만 숙소나 음식 제공 등 영업의 범위 및 시설과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준수 또는 인지해야 할 약 50여 가지의 세세한 규정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정들은 건축허가 및 건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Planning Permission)만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설의 설치 여부가 사업의 전제조건이거나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 가령, 농민이 자신의 농가를 개조해서 소규모의 숙박업(B&B 또는 Self-catering cottage)을 할 경우에 객실, 거실, 식당 등에 관한 개별적인 규제조항은 없으며, 단 1개의 침실을 한 두 명의 여행객에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국세청에 신고를 하거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는 준수해야 한다.
- 농촌관광업의 창업 및 운영에 관한 법규 중 중요한 몇 가지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건축허가 및 건물의 용도변경(Planning Permission)에 관한 규정

- 농민들이 자신의 농장에서 다른 사업을 할 경우 직면하게 되는 가장 어려운 규정 중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도시및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에 근거하는 이 규정은 영국 전역에 적용되며 토지나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신축할 경우 각 지방정부의 개발허가위원회(Planning Permission Committee)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 ① 농장내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 여타의 목적을 불문하고 반드시 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임시 건물일 경우도 해당된다.
 - ② 농장의 건물(사용 또는 비사용 건물)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 농장 부속 건물은 거주용과 농업용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만약, 농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B&B 또는 Self-catering cottage, 식당 등을 마련하는 경우는 그것이 상업적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 여전히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별도의 허가가 필요치 않다.

- 그러나 만약, 축사나 작물 또는 농기구 보관창고 등의 용도를 변경하여 여행객을 위한 숙소나 식당을 마련하는 경우는 반드시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 현재, 영국에서는 농업생산을 줄이려는 정책과 악화된 농민의 소득 상황을 지원하려는 의도 때문에 농민이 기존의 건물 용도를 변경해서 숙소를 제공하는 관광업을 하려는 경우는 대부분 무리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캠핑이나 캐러반 장소 확보의 경우

- 농장관광의 형태 중 캠핑이나 캐러반을 위한 장소를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는 현재의 농업 및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캠핑이나 캐러반을 위한 장소로 변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 위와 같은 개발허가에 대한 결정은 건물 신축이나 용도 전환이 주위의 이웃에 미치는 영향(소음 등), 주차장 시설, 방의 개수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다.
 - 즉, 각 농촌관광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변경되는 시설이 개발허가의 심사대상이 된다.
 -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한 두 가지의 부수적인 설비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창업이 완전히 불허되는 것은 아니며, 부적격 설비로 판정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시 신청할 경우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 실제로 농촌관광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허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는 없으며 각 지방정부의 개발허가위원회가 중점을 두고 보존 또는 개발하려는 분야가 무엇이나에 따라서 지역간에 서로 상이한 결정이 내려지기도 한다.

- 따라서 각 농촌관광 관련 단체에서는 단 1개의 방을 B&B 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개발허가위원회에 문의를 하거나 허가 신청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2) 식품안전(Food safety)에 관한 규정

- 위의 <표 1>과 같이, 영국 농촌 또는 농장관광에서 가장 대중적인 숙소의 형태는 B&B와 Self-catering cottage이다. 그런데, 앞서 자격조건에 관한 규정에서 언급한 것처럼, 농장관광업을 하는 농민이 식사를 제공한다고 해서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식품안전에 관한 법(Food Safety Act 1990)’과 이에 따른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
 - 특히 최근 구제역의 영향으로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면서 관광업소의 식품안전에 대한 규정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 따라서 B&B 등을 운영하면서 식사를 제공하려는 농민은 다음의 의무 사항 또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신고의 의무:

- 숙박업과 식당업을 겸하는 관광업을 하려는 자 또는 식당업(카페나 레스토랑)을 하려는 자는 우선 국세청에 사업 분야와 내용을 신고하는 것과 별도로 ‘음식점 등록에 관한 법(Food Premises (Registration) Regulations 1991)’에 따라 지방정부의 보건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Health)에 사업개시 28일 전까지 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간단한 양식의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비용(예를 들면, 등록세)은 없다.
- 그러나 모든 B&B가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 침실 3개 이하의 B&B를 운영하는 형태의 일반 가정에서 마련하는 식사수준인 소규모 B&B의 경우에는 등록의 의무가 면제된다.

② 식품위생의 의무:

- 관광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식사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식품위

생에 관한 식품안전성 규정(Food Safety (General Food Hygiene) Regulations 1995)’을 준수해야 한다.

- 비록 음식점의 설비나 시설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지만, 포괄적으로 식품의 위생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전적으로 운영자의 책임이다(“Due Delligence”라는 운영자의 관리의무규정).
- 1999년의 ‘식품표준에 관한 법(Food Standard Act 1999)’에서 한층 강화된 식품위생에 관한 의무는 실제로 처벌보다는 식당업 운영자의 식품위생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올바른 관리방법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즉, 음식점의 시설이나 조리 및 관리방안에 대한 사전적인 허가 및 검사규정을 두지 않는 대신에 예고 없이 지방정부의 보건환경부 직원이 방문하여 식품의 관리상태, 음식의 조리절차, 직원들의 위생상태, 남겨진 음식물의 처리, 샘플의 채취 등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이러한 검사 결과는 운영자에게 문서로 통보되는데, 그 보고서에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경우는 운영자에게 시설의 개·보수나 교육과정 참여를 권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소방시설에 관한 규정

- 모든 숙박업소는 ‘소방법(Fire Precaution Act 1971)’과 이에 관련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일반 가정과 달리 상업적인 숙박업소에 적용되는 위 법규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숙박업소는 사업개시 이전에 소방허가(Fire Certificate)를 받아야 한다.
- 이는 응급상황에서 투숙객이나 직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시설, 그리고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발급된다.
- 그러나 일정 규모 이하(즉, 가족구성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대해서는 그 허가의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직원이나 여행객을 포함해서 총 6명 이하의 인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이들이 모두 지상 1, 2층에만 수용되는 경우(즉, 3층 이상이거나 지하에 침실이 있는 경우는 허가필요사항)
- 숙소와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숙소를 제공하고 음식은 투숙객이 조리를 하는 Self-catering 숙소의 경우
- 이외에도 소방허가가 면제될 수 있는 다양한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한 판단은 각 지역의 소방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일단 숙박업의 운영자가 소방위원회에 허가 신청만 하면 바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으며 차후 허가증의 발급을 위한 점검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미비시설이 드러나면 관련시설을 개선 또는 보수하는 것으로 발급 절차는 마무리된다.

4) 장애시설에 관한 규정

- 1995년에 제정된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는 모든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사항들을 법적으로 금하고 있다.
 - 2004년까지 모든 관광시설은 장애인들의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실질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앞으로 새로운 농장관광을 행하는 농민들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 규정을 감안해야 한다.

5) 기타 사항

- 가스 및 전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허가나 신고사항은 아니고 보건안전위원회나 관련 기관에서 인증한 전문가에 의해서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시설 점검은 1년을 단위로 운영자의 책임하에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 TV 시청료에 대한 규정

- 숙박시설에서 투숙객에게 TV를 제공하는 경우 숙박업에 적용되는 ‘Hotel Comprehensive Licence’를 받아야 한다.

- 총 TV 15대 이하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가구에서 지불하는 금액을 지불(연간 약 100파운드 정도)하고, 15대 이상일 경우는 매 5대씩을 기준으로 일반가구 지불금액에 추가로 지불한다.

○ 이 이외에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행객의 기록(Visitor Register), 회계장부의 기록 및 보존(Accounts and Tax Requirement), 보험(Insurance), 식품 및 숙박가격 표시에 관한 규정, 주류판매허가에 관한 규정 등 세부적으로 준수해야 할 규정들이 있다.

<표 2> 관광업 관련 규정

규 정	관련 법규	담당 기관 및 내용
건물의 신개축 및 토지용도 변경 허가 (Planning permission)	-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 - Housing Act 1985	- 지방정부의 관련허가에 관한 위원회에서 관할
소방안전시설의 인증에 관한 규정	- Fire Precaution Act 1971	- 각 지방의 소방위원회에서 담당 - 관련 허가 필요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 Food Safety Act 1990 - Food Safety (General Food Hygiene) Regulation 1995 - Food Safety (Temperature Control) Regulations	- 지방정부의 환경부서에서 담당 - 지방정부에 수시점검의 권한이 있음
가스 및 전기시설에 관한 규정	- Gas Safety(Installation and Use) Regulations 1994 - Electrical Equipment (Safety) Regulations 1994	- 각 지역의 보건안전 위원회에서 담당
장애시설에 관한 규정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	
숙박가격 표시에 관한 규정	- The Tourism (Sleeping Accommodation Price Display) Order 1977	- 4개의 침실 또는 8개 이상의 침상을 제공하는 시설에 적용
음식가격 표시에 관한 규정	- The Price Marking (Food and Drink on Premises) Order 1979	- 음식 종류별로 최소 5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VAT를 포함한 가격 표시
투숙객 기록에 관한 규정	- Immigration (Hotel Records) Order 1972	- 16세 이상 투숙객을 기록하고 12개월간 보존
알콜음료의 판매허가	- Licensing Act 1964	- 지역 법원으로부터 허가권 구입

4. 영국의 농촌관광 정책의 발전 단계별 개요

- 영국 농촌관광 정책은 EU 정책의 변화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1) 제1단계(1988년 이전 공동농업정책 시기)

- 공동농업정책(CAP)이 담당하는 농업부문과 지역정책(Regional Policy)이 포괄하는 비농업적 지역발전의 두 가지 정책으로 나누어져 있던 단계로서, 공동농업정책이 농업활동의 지원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촌관광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대상이 농민이건 비농민이건 상관없이 지역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 MAFF(현재의 DEFRA)의 농장내 관광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환경·운송·지역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Transport and Region: DETR), 통상산업부(Department for Trade and Industry: DTI) 등을 통해서 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 잉글랜드관광국(English Tourist Board: ETB 현재의 ETC)과 각 지역의 관광협회(Regional Tourist Boards)가 농촌의 관광사업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단체로서의 역할을 했고, 이 과정에서 농장관광(Farm Tourism)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졌다.

2) 제2단계(1988년 이후 EU 구조기금 개혁을 통한 정책 통합 단계)

- 이 단계에서는 구조기금의 개혁을 통해서 EU의 각 지역이 5개의 목표 지역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EU의 세 가지 구조기금(ERDF, ESF and EAGGF Guidance Section)이 통합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여전히 EAGGF Guidance Section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CAP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 이러한 구조기금 개혁을 통해서 각 회원국가가 농업정책을 통해서 농민의 다면적 활동(비농업활동 포함)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 영국에서도 1988년 농장다각화사업 지원대책(Farm Diversification Grant Scheme) 또는 목표 5b 정책(Objective 5b policy)에 따른 농촌발전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농장다각화사업을 수립, 시행하였고, 본격적으로 농업 부문 예산을 통한 농장관광에 대한 지원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 그러나 2000년까지 시행된 이러한 정책은 여전히 농민이나 농가에 대한 지원은 MAFF에서 담당하고, 비농민의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지원은 다른 부서(DETR and DTI)에서 지원되는 등 산업부문별로 분리된 지원체계를 갖고 있었다.
- 이는 EU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EAGGF Guidance Section의 예산이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민에게 지원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 이러한 분리된 정책 예산의 지원체계는 통합적인 지역발전의 추진을 지원하는 데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Agenda 2000 개혁에서 대폭적인 변화를 하게 된다.

3) 제3단계(EU Agenda 2000 개혁)

- 공동농업정책이 농촌발전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에 시장조치에 사용되던 EAGGF의 Guarantee Section을 농촌발전정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화된 시기이다.
- 이 Agenda 2000 개혁에 의해서 각 회원국들은 통합적인 농촌발전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하였고, 영국은 기존의 모든 농촌발전 관련 조치들을 통합해서 지역별로 수행하는 농촌발전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 따라서 기존에 서로 분리되어 시행되었던 농촌관광에 대한 지원사업이 ‘농촌기업지원대책(Rural Enterprises Scheme)’으로 통합되었고, 농민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을 포함해서 모든 농촌지역의 중소규모 사업

이 이 정책을 통해서 지원된다. 또한 이를 보조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직업훈련 대책(Vocational Training Scheme)’을 실시하고 있다.

- 이러한 농촌기업지원대책은 실제 각 개별지역에서 실시될 때는 다양한 명칭과 목적, 내용을 갖게 된다. ‘농촌기업지원대책’이라는 명칭은 중앙정부기관인 DEFRA에서 농촌발전 프로그램을 전담하게 되면서 각 지역에서 실시될 개별 사업들을 통칭하는 것에 불과하고, 각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의 지방사무소, 지방정부, 정부관련 공공단체, 민간단체 등이 서로 협력해서 다양한 형태의 농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시행하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에서 설정한 ‘농촌기업지원대책’의 범위내에서 각 지역에서는 농장관광업, 농촌관광업, 식품 등 기타 제조업, 운송업 등 분야에 관계없이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참고로, 위의 두 가지 대책을 제외한 다른 환경 관련 조치(ESA, 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 등)는 기존 농업정책에서 지원하던 것을 그대로 실시하는 것으로 오직 농민에게만 적용되는 정책이고 간접적으로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는데 일조하기는 하지만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5. 농촌관광 정책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 영국 농촌관광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지 정부 부처가 주로 관련된다.
 -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
 - 환경·식료·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 통상산업부(Department for Trade and Industry: DTI)

- 이들은 정책의 수립, 예산의 지역별 배분, 평가 등 정책수행의 전 단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행한다.
 - 각 지역에서 실제적인 정책의 집행은 런던지역을 포함하는 총 9개 지역의 중앙정부 지역사무소(Government Regional Offices)가 담당하며, 지역사무소는 중앙부처와 지역단체들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중간자 역할을 수행한다.
- 영국의 농촌발전정책(England Rural Development Programme: ERDP)에 따르면 각 지역 발전전략의 수립 및 운영은 10개로 나누어진 각 지역의 지역발전청(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RDA)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 각 지역의 RDA는 전반적인 지역의 발전전략의 수립과 세부 프로그램의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지역단체들이 협력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들에 관해서 심사한 후에 이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정부에 신청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정부정책을 추진하는 것 이외에 실제로 지역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RDA가 직접 다른 단체들과 협력해서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민간단체나 투자회사 등을 통해서 유치하는 역할도 한다.
- 지역 농촌발전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또 다른 공적 기관은 바로 지방정부이다.
 - 영국은 행정구역상 총 34개의 지방정부(Local County Council)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중앙정부와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독자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의 지역발전 프로그램을 수립, 실시하기도 한다.
 -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가 지역의 관련 단체들을 통해서 지역의 농민이나 사업자에게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방 정부는 한편으론 다른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지원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독자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해서 직접 농민이나 사업자를 지원하기도 한다.

- 영국의 농촌발전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각 지역에 있는 농촌발전 관련 단체들이다<표 3>.
 - 이들은 대부분 본부와 각 지역별로 지방조직을 갖고 있는 형태이다. 본부와 지방조직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본부와 지방조직이 별도의 운영체계를 갖고 있기도 하다.
 - 이들은 단체 유지 및 사업을 위한 예산의 대부분을 정부예산으로부터 받는 정부관련 단체(Statutory body)와 순수하게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단체(Voluntary body), 그리고 은행을 포함하는 민간기업(Private Consultants)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단체의 성격 구분은 지역 농촌발전 프로그램의 수행과정에서는 무의미하게 되는데, 이는, 농촌관광 활성화 대책을 예로 들면, 중앙정부 부서에서 정책예산을 지역의 RDA를 통해 배분한다는 원칙만 있을 뿐 실제 프로그램의 형성 및 집행과정(즉, 예산의 할당을 신청하고 사업자에게 분배하는 과정)에는 위에서 언급한 각종 지역단체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은 지역단체 중심의 정책 시행체계가 농촌관광 정책을 포함하는 영국 농촌발전정책의 특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다.

6. 농촌관광 정책의 시행과정 및 지역단체의 역할

- 영국의 농촌관광 활성화 대책은 기본적으로 지역 농촌발전계획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라서 시행된다.
 - 최근 Agenda 2000 개혁에 따라 도입된 지역 중심의 발전정책은 실제로 1988년 EU의 구조기금 정책이 실시되면서 영국에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10여 년의 시험과정을 거친 이후에 현재의 시행체계로 정착되었다.
 - EU 구조기금 개혁이 유럽지역을 5개의 목표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목표지역에 EU의 세 가지 구조기금(ERDF, ESF, EAGGF Guidance Section)

<표 3> 농촌관광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구 분	정부기관 및 단체	역 할
중앙정부 부서	-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 농민과 비농민을 포함해서 농촌관광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지원 - EU EAGGF 예산 담당
	-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	- EU ESF 예산과 자체예산으로 농촌관광 지원 - 대부분 ETC를 통해서 지원
	- Department for Trade and Industry (DTI)	- EU ERDF 예산을 담당 - Business Link나 Small Business Service를 통해서 소규모 관광사업 지원
지방정부 기관	- 중앙정부 지역사무소 (Government Regional Offices)	- 총 9개 지역에 있음. -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을 지역에서 수행 - 다른 단체들과 협력해서 농촌지원 프로그램의 수립, 시행
	- Local County Council - District Council	- 총 34개의 County council과 245개의 District council이 있음 - 다른 단체들과 협력해서 농촌관광지원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 - 독자적인 프로그램의 수립, 시행
정부관련 기관	- 지역발전청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RDA)	- 지역별로 구분된 총 10개의 RDA가 있음. - 지역발전전략의 수립에 중추적 역할 - EU나 중앙정부로부터 지역발전예산을 확보, 각 프로그램에 분배하는 역할 - 다른 단체와 협력해서 농촌관광지원 프로그램을 직접 수립, 시행하기도 함.
	- 잉글랜드 관광협회 (English Tourism Council: ETC)	- DCMS나 다른 정부부서로부터 사업예산을 받아서 실행 (project base) - 농촌관광 활성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지역관광협회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음.
	- 영국관광협회 (British Tourist Board: BTA)	- 주로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동 - 최근 ETC와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지역 관광협회 (Regional Tourist Board: RTB)	- 총 10개의 지역관광 협회가 있음. - ETC와 협력해서 지역 농촌관광사업 지원 - 지방정부나 지역의 단체들과 협력해서 별도의 농촌관광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 - 특히, EU 구조기금의 목적 1, 2 지역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짐.
	- 전원관리청 (Countryside Agency: CA)	- DEFRA로부터 주로 예산 지원을 받음. - 농촌관광 뿐 아니라 전반적인 농촌지역의 발전과 환경보존에 중추적인 역할
	- 국립공원 (National Parks)	- 영국 전체에 총 10개의 국립공원이 있음. - 각 국립공원별로 해당 지역단체들과 협력 또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농촌관광업을 지원하고 있음. - 마케팅 뿐만 아니라 자본투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음.

<표 3> 농촌관광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 계속

구 분	정부기관 및 단체	역 할
민간단체	- 비즈니스 링크 (Business Link)	- DTI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 농민과 비농민의 농촌관광업의 창업 및 운영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의 기능을 함. - 관광업자의 보조금 신청을 지원함.
	- 농업경영컨설턴트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Advisory Services: ADAS)	- 농민을 대상으로 농촌관광업의 창업에 필요한 경영평가 등 상담, 조언 및 정보제공의 기능을 함. - 농촌관광지원 프로그램에 다른 단체와 파트너십을 형성, 지원함.
	- 내셔널 트러스트 (National Trust)	-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농촌관광 및 경관보존에 관한 가장 큰 민간단체 -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내에서 갖가지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며,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막대한 재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와 연합해서 농촌관광업을 지원하기보다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수행함.
	- 농장관광협회 (Farm Stay UK)	- 농장관광사업을 하는 농민들의 연합체로 기존의 Farm Holiday Bureau임. - 지역관광협회와 협력해서 회원업체의 소개책자나 선전물을 출판함. - 공동마켓팅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영국 리조트 협회 (British Resort Association)	- 영국 리조트에 대한 공동 선전물 출판
	- 직업훈련 및 기업위원회 (Training and Enterprise Council: TEC)	- 중소규모 관광업자들에게 경영상담, 정보제공과 관련된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TEC 자체에 ERDF나 ESF로부터 지원된 예산이 있음.

을 통합 지원하게 되었지만, 영국의 입장에서 이것은 새로운 정책 지원체계의 형성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 왜냐하면, EU의 세 가지 구조기금들을 각각 서로 다른 정부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었고, 이들 정부부처가 각기 독자적인 정책적 목적, 대상, 지원체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EU의 구조기금 개혁의 목적이 실제 지역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 따라서 Agenda 2000 개혁을 통해서 영국은 지역발전정책을 통괄하는 단체로서 지역발전청(Regional Development Agency)을 설립하고 이들에게 EU 보조금과 각 부서의 예산을 분배하고 다양한 지역발전 프로그램에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 각 지역단체들은 이러한 지역발전 프로그램을 형성하고 직접적으로 민

간이나 관광사업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지역단체의 범위에는 중앙정부의 지역사무소를 포함해서 위에서 언급한 모든 단체들이 해당되며, 이들은 각각 설정한 농촌관광 발전전략에 근거해서 주로 다른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농장관광 또는 농촌관광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 이에 필요한 예산들은 대부분 EU 구조기금이나 기타 예산,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지만, 정책시행 규정으로 EU와 정부의 보조금이 총 필요예산의 일정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정책 분야나 지원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음), 자신들의 독자적인 예산이나 또는 다른 단체와의 연합, 민간단체(자선단체) 등과 협력해서 나머지 예산을 마련한다.
 - 기존에 농민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직접 농촌관광 사업자에게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역단체나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원하는 이유는 정책지원금이 지역발전에 협동적이고 광범위한 효과를 갖게 하기 위해서이다.
 - 따라서 대규모의 관광회사가 농촌관광사업을 하는 경우, 단일한 사업이라도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EU나 정부로부터 직접 한 업체가 지원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농촌관광사업은 개별적인 보조금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단체들이 만든 정책을 통해서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직접 일정한 규모의 단체를 형성해서 EU,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단체 등에게 보조금을 요청할 수도 있다.
 - 가장 대표적인 예가 농민들이 회원으로 구성된 농장관광협회(Farm Stay UK)라고 할 수 있다.
- 결국, 농민들을 포함한 소규모 농촌관광업자는 위에서 언급한 기관이나 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정책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7. 농촌관광 활성화 대책

- 영국의 농촌관광 활성화 대책은 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1) 경영조언 및 평가

- 현재 관광업을 경영하고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관광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농민 및 일반인에게 관광업 경영에 관한 조언을 한다. 즉, 현재 농가의 농업경영 상태에서 어떤 형태의 관광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지를 상담해주는 것에서부터 농민이 고려하고 있는 마케팅 방법에 대한 조언까지 해주고 있다.
 - 이는 주로 각 지역의 관광협회(Regional Tourist Boards)에서 담당하며 대부분 무상으로 제공된다. 각 지역 관광협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 관광업자들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 또 다른 기능이 경영계획서의 작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광업자가 지역기관이나 단체들로부터 보조금(Grant)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해주고 실질적으로 계획서의 작성을 대행해 주기도 한다.
 - 경영평가 지원은 지역 단체의 관련직원이 2~3일간 현지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경영상태를 체크하며 점검 결과를 농민에게 서면으로 알려준다.
 - 단순히 경영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역시 무상으로 서비스되며, 만약 보조금을 위한 계획서 작성을 도와줄 경우 통상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지역단체에서 보조해 준다.
 - 경영평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행하는 지역단체들은 지역관광협회, 비즈니스 링크(Business Link), 전국농민연합(National Farmers' Union: NFU), 교육 및 기업위원회(Training and Enterprise Councils: TEC) 등이고, 이들은 관련정책비용을 EU나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2) 직업훈련 및 교육

- 경영 상담이나 평가 결과 관광업을 경영하는 본인이나 가족 또는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무상으로 각 단체에서 실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단체나 대학 등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과정에 등록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는 관련 비용의 50%를 보조해 준다.
- 직업훈련은 대부분의 지역단체에서 정책지원의 필수적인 항목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정책프로그램에서 직접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관련된 다른 프로그램에 연결시켜 주기도 한다.

3) 자본투자 보조(Capital Grant)

- 농촌관광 지원 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항목이고 대부분의 농민이나 관광업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로, 새로 창업을 하거나 기존 시설물의 개보수에 지원된다.
- 지역별로 그리고 프로그램별로 지원 대상, 내용, 지원액이 서로 다르지만, 농민이나 소규모 관광업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액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즉, 중앙정부의 규정)은 사업체당 총 투자액의 50%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통상 25%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제출되는 경영계획서 상에서 본인이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러한 자본 마련(Matching funding)을 위해서 지역단체들이 자선단체나 은행 등의 대출을 알선해 주기도 하지만, 여전히 농민이나 소규모 관광업자들에게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 한편, 지원되는 보조금은 선택된 지원자들에게 일시불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3년 간 분할해서 지원되며, 각각 관련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지급된다. 즉, 일단 사업자가 모든 지출을 먼저 행하고

1년 단위 또는 사업계획의 완료 이후에 후불로 받게 되는 것이다.

- 자본투자 보조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사업자의 경영상태가 보조금 없이도 사업계획을 완료할 수 있을 정도로 좋다거나 또는 보조금을 지급해도 사업계획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즉,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는 부유층이거나 극히 어려운 소득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조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러한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자본투자보조 정책은 EU 구조기금 정책 중 목표 1과 5b지역에 대한 정책에서 특히 초점을 두었던 사업으로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지속되었으나 영국의 경우 지역단체들이 본격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형성했던 것은 1994년 이후부터이고, 최근 농촌발전계획에서 농촌기업지원대책(Rural Enterprise Scheme)으로 통합되어 실시되고 있다.

4) 마케팅 보조(Marketing Grant)

- 현재 경영하고 있는 관광업체의 선전이나 마케팅 방법에 대한 상담이나 경영조언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 지역의 관광협회나 농장관광협회가 공동으로 팸플릿이나 업체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작하는데 지원하기도 하고 개별 업체가 독자적인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지원하기도 한다. 전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각 협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숙박업체에 대한 소개책자이다.
- 이러한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협회가 정부나 기타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예산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참여 관광업체에게 일정액을 받고 나머지는 협회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 마케팅 방법에 대한 상담이나 조언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경영조언과 유사한 형태로 지원되지만 일시적으로 전문적인 경영인의 고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단체에서 소요비용의 일정액을 보조해 준다.

- 위와 같은 4가지 형태의 농촌관광지원 대책은 대부분 지역 정부기관이나 단체들간의 파트너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칭을 비롯한 세부사항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 참고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목표 5b지역 정책의 일환으로 잉글랜드 북동부지역에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정책지원사업이 총 150여 개가 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몇 가지 예는 다음의 <표 4>, <표 5>,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 잉글랜드 북동부 목표 5b지역 농장관광활성화 정책
(Farm Tourism Initiative)**

예산 출처 및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AGGF Guidance Section 과 MAFF 가 주요 예산지원 - 각 참여 단체의 Matching funding이 있었음. -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지속된 사업
정책참여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rthumbria Tourist Board (운영주체) - 농장관광협회 (Farm Stay UK) - 전원관리청 (Countryside Agency) - 2지역 직업훈련 및 기업위원회 (TEC) - Northumberland and Durham County Councils - 4지역 District Councils
사업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농장관광의 현황파악 - 농장관광경영 전문성 향상 - 농장관광시설 극대화 - 농장관광시설 수준을 개선
사업지원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조언 및 상담, 경영평가 - 관광업 종사자의 직업훈련 - 마케팅 보조 - 자본투자 보조
지원자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잉글랜드 북동부 목표 5b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 - 총 농가소득의 50%를 농장내에서의 활동으로 얻는 자 - 농가의 농업소득이 평균 농업노동자 소득의 최소 15%.
지원종류 및 보조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케팅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 계획에 제시된 총 소요비용의 35% 정도 보조 - 최고 한도액 £4,000 - 3년간 분할 지원 2) 농장관광 팸플렛의 출판 3) 자본지출에 대한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시설의 신설 및 개선 비용의 25% 정도 보조 - 최고 한도액 £25,000 - 관련 시설이 완비된 후에 일시불로 보조금 지급 4)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표 5> 잉글랜드 북동부 목표 5b지역 농장사업지원 정책

사업명칭 및 기간	- Northumbria Farm Business Support Project -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지속됨
주요예산 출처	- EAGGF Guidance Section 과 MAFF가 주요 예산 지원 - 각 참여단체들이 부분적으로 예산을 지원함.
정책참여 단체	- 전국 농민회 (National Farmers Union: 운영주체) - 비즈니스 링크 (Business Link) - ADAS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Advisory Service) - 지역의 2개 대학 (Houghall College, Kirkley Hall College) - Teesdale Training and Enterprise Council
사업지원분야	- 농장사업 평가 (무상) - 사업 계획서 작성 지원 (소요비용의 50% 지원) - 교육훈련 필요여부 점검 (무상) - 교육훈련과정 알선 (훈련비용의 50% 지원) - 사업의 환경평가 지원 (무상)
지원자격 기준	- 잉글랜드 북동부 목표 5b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농민

<표 6> 잉글랜드 북동부 목표 5b지역 농장다각화 정책
(Farm Diversification Initiative)

예산 출처 및 기간	- EAGGF Guidance Section 과 MAFF가 주요 예산 지원 - 각 참여단체들이 부분적으로 예산을 지원함. -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지속됨
정책참여 단체	- 북 요크셔 카운티 (North Yorkshire County Council: 운영주체) - 비즈니스 링크 (Business Link) - Northumberland / Durham County Councils - 전원관리청 (Countryside Agency) - 2지역 직업훈련 및 기업위원회 (TEC) - Teesdale District Councils
사업의 목적	- 농가의 소득원 다각화
사업지원분야	- 투자상담 및 조언 - 농가간 협동사업지원 - 마케팅 사업보조 - 사업타당성 조사, 평가 - 자본투자 보조 * 이 정책은 농장관광 활성화정책이 주로 담당하는 숙박업을 제외한 식품제조업, 레저사업 등 기타 비농업분야 사업에 보조함.
지원자격 기준	- 잉글랜드 북동부 목적 5b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 - 총 농가소득의 50%를 농업소득인 농민이나 가족.
지원종류 및 보조금	1) 마케팅 소요 자금 지원: - 총 소요비용의 50%까지 보조 - 3년간 분할 지원 2) 사업설비 신설 및 개선자금 지원: - 총 소요금액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평균 25% 정도 지원 - 3년간에 걸쳐 지원되면 매년 후불로 지급한다.

프랑스의 농촌관광 정책

1. 농촌관광의 영역

1.1. 지뜨 휘호와 뫼블레(Gîtes ruraux와 Meublés: 독립 농촌 주택)

- 방문자가 농촌 주택을 빌려 숙박하는 형태로서 지뜨 휘호(Gîtes ruraux)와 뫼블레(Meublés)가 있다.
 - 지뜨 휘호(Gîtes ruraux): 농촌에 위치한 독립 주택으로 계절을 불문하고 주 단위, 또는 주말 단위로 빌릴 수 있다.
 - 뫼블레(Meublés): 공공에 의해 인정된 휴가기간동안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빌릴 수 있는 곳이다. 단, 숙박하는 사람의 주 거주지나 별장이 아닌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여행객으로서만 머물 수 있다는 의미이다.
- 지뜨 휘호(Gîtes ruraux)는 주로 지뜨 드 프랑스(Gîtes de France)라는 연합체에 많이 속해 있다.
 - 지뜨 드 프랑스에는 5개 등급으로 구분되는 43,000개의 지뜨 휘호가 가입해 있고 이 중 3분의 1이 농민이다. 총 100여 개 정도인 프랑스의 광역 자치단체 중 하나인 도(département)에 걸쳐 전국 단위로 업소 리스트를 작성 배부한다.
 - 지뜨 드 프랑스라는 마크 하부에는 “gîtes”가 입지해 있는 곳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Gîtes de Pêche(낚시), Gîtes de Neige(스키), Séjours en vignoble(포도밭), Gîtes accessibles aux personnes handicapées(육체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곳), Gîtes Panda(천연적인 자연환경), Gîtes et cheval(승마) 등이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지역과 관련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 한편 지뜨 드 프랑스와 성격을 달리하는 연합체로서 Accueil-Paysan이 운영하는 gîtes paysans도 있다.
- 뫼블레(Meublés)를 운영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관련 연합체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독립적으로 여러 규제나 세금 규칙에 합당하도록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 이와 관련되는 가장 큰 연합체는 Clévacances로 55개 도(département)에 20,000개 업소가 있다.

상업용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관광용으로 이용되는 농촌의 방이나 집들을 반드시 *mairie* (우리나라로 보면 시청, 읍, 면, 동 사무소)에 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나 실효가 없었다. 따라서 1999년에는 이 강제 조항을 없앴다.

1.2. 샹브르 도뜨(Chambre d'Hôtes: 주인집 방을 빌림)

- 지뜨 휘호나 뫼블레가 독립 농촌 주택이라면, 샹브르 도뜨는 하룻밤 또는 며칠 밤 묵어가는(즉, 아주 단기간) 관광객들에게 집안에 있는 방 1-2개를 빌려주는 형태이다.
 - 대개는 아침 식사가 함께 제공되며,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 중요한 것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로서 방 하나 당 75,000프랑 정도를 들여서 보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지뜨 드 프랑스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7,650개 업소가 22,320개의 샹브르 도뜨를 운영하고 있다. 샹브르 도뜨의 등급은 4등급으로 구분한다. 이 중 고급의 서비스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646개의 샹브르 도뜨와 일반 지뜨가 구분된다.

1.3. 캠프 카라바닝(Campings caravanings: 야영)

- 캠핑차, 방갈로, 이동 주택 등을 이용한 영업으로 유럽의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프랑스는 이 방면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이다. 전국적으로 3만 개의 침대, 962,000개의 캠프 카라바닝이 있다.
 - 이는 상대적으로 법률적 제한이 매우 까다롭고 세부적인 규제가 많다. 운영하는 텐트, 카라반 등의 수가 일정 개의 수를 넘어서면 반드시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캠프 카라바닝 안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 캠프 앙 페름 다췌이(Camping en ferme d'accueil): 농가 캠핑. 농민에 의해 농민이 사는 집과 멀지 않은 농경지 위에서 운영되는 캠핑으로서 «Bienvenue à la Ferme, 농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표지판으로 표시된다.
 - 캠핑 영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놀이터와 휴식을 위한 공간 등이 구비되어 있다.
 - 이 마크-Camping en ferme d'accueil(캠프 앙 페름 다췌이)-는 법이 인정하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며, Fédération Française de Camping et de Caravaning이 인정하고 Agriculture et Tourisme이 부여하는 품질 보증 정도이다. 이 마크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소지한 대지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야 하며, 텐트 등의 수가 총 6개를 넘어서는 경우 도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지방 의회(도의회, 시의회)에서 결정한 규칙들이 운영 내용들을 제한한다.
 - 지뜨 드 프랑스 캠프(Camping «Gîtes de France»): 지뜨 드 프랑스에 가입되어 있는 캠핑도 있다. 운영자가 농민인 경우 «à la ferme, 농가»라는 표지를 첨가할 수 있다. 현재 950개가 등록되어 있다.

캠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민이 사는 집과 가까운 곳이 좋다. 또 여러 가지 준수해야 할 조건들이 있는데, 적어도 100m 안에 여러 개의 세면대 및 식수 공급처가 설치된 화장실이 있어야 하거나, 더운 물이 나오는 샤워시설, 전자제품 사용을 위한 플러그를 뽑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 캠핑 당 적어도 300m² 정도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아비따 레저더 라지흐(HLL: habitats légers de loisirs): 오두막 집 등을 간단하고 가벼운 소재로 만든 주택(경주택). 조립, 해체, 수송이 가능. 주택과 대지의 비율 준수 등과 같이 규칙 사항들을 준수하는 한해서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안락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덕분에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주 단위 또는 연 단위로 관광객을 받는다.

- «Parcs Résidentiels de Loisirs 휴가를 위한 주택 단지»
- «Chalets Loisirs 휴가를 위한 샬레(오두막)집»
- «Huttes de France» 등

- 빠 레지당시엘 더 라지흐(Parcs Résidentiels de Loisirs): 휴가를 위한 주택 단지. 캠핑을 다루는 법에서 이 숙박 단지를 함께 다루는데, 등급 구분은 «관광에 대한 도위원회 Commission départementale de l'Action Touristique»가 주관한다. 단지 전체가 한 소유주(재단, 사단)에 종속되어야 하며 일, 주, 월 단위로 임대된다.

각 숙박처에는 식수와 전기가 공급되어야 하며, 하수처리 및 쓰레기 처리, 안전 관리(예를 들면, 화재) 등이 규율에 적합해야 한다. 공중전화, 만남의 장소, 놀이터, 운동장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적어도 단지 대지의 10% 이상에 나무나 다른 식물들로 덮여 있어야 한다.

- 샬레 라지흐(Chalets Loisirs): 휴가를 위한 오두막집. 지프 드 프랑스의 새로운 상품으로, 자연 경관이 탁월한 «휴가를 위한 주택 단지»내에 설치된 개인 주택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최대한 25개의 개인 주택. 일, 주, 월 단위로 임대되며, 현재 약 40개의 장소에 320개의 오두막집이 있다.

- 위뜨 드 프랑스(Huttes de France): 21개 도의 90개 시립 캠핑지에 설치된 900개의 경주택(가벼운 자재로 만든 주택)을 관리하는 연합으로, 예약 전담 창구를 둔다. 관광철에는 주 단위로, 관광철 이외에는 일, 주말 단위의 예약도 가능하다. 작은 부엌과 난방을 완비한 작은 오두막집으로, 이불 겹침, 베개침, 청소나 설거지에 필요한 세제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야영지(캠핑지)나 그 인근에 설치를 하여 야영지에 조성되어 있는 기반 시설들을 공동 이용하게 한다.

1.4. 식당업(Restaurantion)

- 식당업도 숙박업과 보충관계에 있는 사업으로 관광객들을 단골화하거나 관광 수익을 높이는 데 기여하므로 농촌관광의 중요한 부분이다. 식당업은 위생과 설비에 있어서 규칙들이 대단히 까다롭다.
- 식당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 따블르 도뜨(Tables d'Hôtes): 샹브르 도뜨, 지뜨 휘호, 농가 캠핑의 형태로 현지에 묵고 있는 관광객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형태
 - 접대할 수 있는 손님의 수가 엄격히 제한. 예를 들어, 지뜨 드 프랑스의 경우, 따블르 도뜨는 반드시 샹브르 도뜨와 결합되어서만 운영되며 최대 접대 관광객을 15명으로 제한한다. 단, 일반적 기준은 최대 20명까지이다.
 - 주인과 관광객들이 반드시 한 상에서 음식을 나눠 먹어야 하며 메뉴도 한 가지로 통일하도록 한다.
 - 해당 시·군, 도의 세무 부서에 신고가 필수적이며, 꼬뮌(우리나라로 보면 시·군)의 직업세 부서에서 발급되는 면허증, 음식물을 통한 독소 감염에 대비한 보험도 필수적이다.
 - 호베흐즈 알라 페흠(Auberges à la ferme 또는 fermes auberges): 경우에 따라 숙박업과 연계될 수도 있는 농가 식당 형태
 - 농가(ferme)라는 용어의 사용은 이 형태가 일반 식당과는 다르며 농업 경영과 반드시 연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물론 농민이 아니어도 운영은 할 수 있으나, 이 때 반드시 régime social agricole에 가입되어야 한다.
- 제공되는 식사의 원료의 대부분은 직접 재배된 것이어야 한다. 만약 자급이 안 되는 지방 특산품(예를 들면 포도주, 치즈)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조달도 가능한데 이때는 다른 농민으로부터의 조달이 장려된다.
- 파블르 도뜨와는 달리, 일반 손님들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더욱 전문적이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
- 대부분의 농가 식당: «Fermes Auberges Bienvenue à la Ferme»라는 연합체에 가입해서 운영된다. 이 마크(연합체)는 Assemblée Permanente des Chambres d'Agriculture 상설 농업위원총회에 신청을 하면 되고, Agriculture et Tourisme에 의해 관리된다.
 -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총 손님수 제한은 없고 반드시 가족 중 한 사람이 농민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 전국적인 차원의 일반 규칙이 있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도별 규칙(접대 손님 수 상한선, 사용하는 식품 재료의 원산지 제한, 권장 또는 의무 직업 교육 내용 등에 대한)이 있다.
 - 농가 식당이 이 마크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단체 자체의 심사위원 등이 현지를 방문하여 가부를 심사하는데 예를 들면 손님을 맞는 것이 얼마나 친절한지 그리고 «농촌»의 이미지를 발견하는 데 얼마나 적절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집 등이 농가다운지 등이다. 그밖에 음식 준비는 반드시 농가 경영(농업)에 참여하는 성원이 해야 하나, 보조적으로 외부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하는 재료의 대부분이 반드시 이 농가로부터 생산되어야 하는데, Agriculture et Tourisme으로부터 인정된 농민이나 농민 단체로부터 나온 일부 재료는 사용할 수 있다. 포도주 등 전통적인 지역 특산물을 사서 상에 올리는 경우 반드시 «현장»에 명시하고, 손님들에게도 그 출처를 명확히 알린다. 요리 메뉴는 향토 별미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

- 위생, 안전, 노동 조건, 표지 조건 등은 법으로 정해진 조건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부엌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복잡한 조건 등이 만족되어야 한다. 음식물로 인한 독소 감염, 작업 도중의 사고 등에 대한 보험이 필수적이다. 기타 등등의 이유로 예약 손님을 위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식당 영업에는 허가증이 필요하다. 메뉴와 가격은 식당 밖에 반드시 걸어 놓고, 영수증은 반드시 손님에게 준다. 농가 식당 경영에 있어서는 식당 자체의 운용뿐만 아니라 행정, 세금 등과 관련하여 복잡한 업무가 많다.
- 구떼 알 라 페흠(Goûters à la ferme): 농가 간식
- 간식 차원에서 운영 주체가 되는 농민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맛보게 하는 것이다. 간혹, 재배나 가공 과정을 보여 주는 등의 부속 프로그램을 붙일 수도 있다. 손님들이 나중에 먹기 위해 싸갈 수도 있고, 농민들이 자신의 생산물을 선전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점포 하나와 화장실 하나 정도를 갖추는 것으로 조건이 충족된다.
 - 현재 280개 정도가 Goûters Bienvenue à la Ferme이라는 단체(마크)에 가입, 운영되고 있다.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조건들이 덜 까다로운 대신, 영업 시간은 엄격히 제한된다. 예를 들면, 오전 12시까지로 하거나 또는 오후 3시에서 6시까지이다.
 - 세금국으로부터 영업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Agriculture et Tourisme은 운영 방식, 통제, 운영 시간 등에 대한 내부 규율을 마련해 놓고 있다.
- 헤스토랑(Restaurants): 식당
- 프랑스 전국에 85,000개 식당이 있는데 이중 8,000개가 관광용 식당(restaurants de tourisme)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관광용 식당은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안락, 접대의 친절도 및 전문성 등)를 만족시켜야 한다. 관광용 식당을 자처하는 업소는 도청에 등록을 하기만 하면 되고 나중에 심사가 이루어진다. Cuisineries gourmandes와 Restaurateurs de France가 가장 큰 마크이다.

1.5. 비지뜨 더 페흠(Visites de fermes, 농장 방문 프로그램)

- 방문자가 직접 농업 경작지를 둘러보도록 함으로써 농업 세계를 발견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공급자의 자격 요건은 간단해 신고만 하면 된다. 농가 간식 등의 다른 영업형태와 복합되어 운용되는 경우가 많다.

1.6. 오텔 뤼호(Hôtels ruraux, 농촌 호텔)

- 프랑스에는 약 20,000개의 농촌 호텔이 존재한다. 등급이 별로 구분된다. 전문적인 호텔업이라고 보는 것이 좋고 때때로 농촌 호텔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와는 달리 도시적인 그리고 현대적인 호텔일 경우가 있다.
 - 대표적인 마크가 인구 5,000명 이하의 농촌 꼬뮌에 있는 호텔에게만 자격 요건이 주어지는 로지 드 프랑스(Logis de France)이다.

1.7. 방뜨 더 프로뒤 페흐미에

(Vente de produits fermiers, 농산물 직판)

- 프로뒤 더 떼화(produits de terroir): 토속 생산물. 역사와 토지에 연관될 수 있는 모든 제품을 일컫는 말이다. 품질 보증을 하는 몇 가지 기준이 공공에 의해 마련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원산지 증명(AOC), 붉은 상표(Labels rouges) 등이다.
- 프로뒤 더 페흐미에(produits de fermiers): 농가 생산물. 농가 생산물에 대한 구분 조건으로 «농민에 의해 농가에서, 농가에서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전통적이고 수공업적인 방법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라고 한다.

2. 농촌관광에 대한 세금(Les régimes fiscaux)

- 농촌관광에서 나오는 수입에 대한 직접적 세금 부과,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간접세, 지방세에 대한 내용은 매우 복잡하고 계속 변화하고 있

는 부분이다. 특히 이는 농촌관광 종사자의 사회적 지위(Les statuts sociaux)와도 밀접히 관련이 있다.

-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사회 분담금 등을 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판단해야 하는데, 농촌관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회적 분류로 나눌 것인가는 이 사람이 내는 보험 내용, 원천징수금, 의료보험, 사고 보험, 자동차 관련 세금 등의 율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 수익 부분에 대한 조세 내용을 결정하는 여러 기준이 있다. 먼저 농촌관광 사업 주체의 성격이 농민인지, 개인 사업가인지, 아니면 기업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며, 사업의 내용이 상업적인 활동인지 비상업적인 활동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총 수익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진다.

2.1. 수익에 대한 직접세

■ 분류 1: 비상업적인 경우

- 자신이 사는 집의 방 한 칸을 샹브르 도뜨 형으로 관광 영업을 할 때 연간 수입이 5,000프랑 이하인 경우는 세금을 면제한다.
- 본업이 있고 부업으로서 가구가 갖추어진 독채를 관광 숙박처로 임대하는 경우,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것은 총 연간 매출고 500,000프랑이다.

■ 분류 2: 상업적인 경우

- 위의 두 경우가 비 상업적인 성격으로 분류가 되었다면, 개인 기업(여기서 개인 기업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사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기 위함)이 농촌관광 숙박, 식당 등을 유일한 직업으로 하는 경우는 상업적인 활동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이때 조세 부과를 위한 두 가지 분류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상업형 소기

업 조세 부과형으로서 기준이 되는 것은 총 매출액, 나머지 하나는 실수익에 대한 조세 부과형이다.

- 상업형 소기업 조세 부과형(Régime des micro entreprises commerciales)
 - 물건을 판매하거나 그 자리에서 먹거나 싸가는 식품을 파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의 연간 총 매출고가 500,000프랑을 넘지 않는 경우, 앞에서 언급된 서비스를 벗어나는 내용의 관광사업을 하는데 연간 총 매출고가 175,000프랑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 만약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운영할 때는(예를 들면, 숙박업 이외에 또 다른 식당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이 사업들이 동일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 다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조세 부과 방식이 달라진다. 만약 이 상업형 소기업이 연간 총 매출고가 위에 언급된 한도선을 넘어서는 경우 그 다음해부터는 상업형 소기업 분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실수익에 대한 조세 부과형(Régime du réel BIC)
 - 운영주가 원하거나, 상업형 소기업 조세 부과정보다는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에 적용한다. 최소한 2년을 단위로 해서 다른 조세 부과형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므로 관광사업 실적 내용에 맞춰 대응하기에 좋은 조세 부담제도이다.

■ 분류 3: 비상업적 수익 BNC에 대한 세금 부과

- 농촌관광 영역에서 스포츠를 가르치는 사람(등산 기술에 대한 수업을 하거나 래프팅 강습을 하는 등)의 수익은 농업 관련 수익도 아니며 상업 관련 수익도 아니다. 이런 사람이 내는 세금 형태로 régime des micro entreprises BNC, régime du réel BNC가 있다.

■ 분류 4: 농민에 대한 조세 부과

- 농민에 부과되는 조세형태 중 소기업형:

- 숙소 대여업에 있어서는 수익이 500,000프랑 이하인 경우 세금의 70% 공제
- 식당업의 경우 175,000프랑까지는 50% 공제
- 소기업형 조세 형태를 초과하는 규모는 농민의 원에 의하여 실수익에 대한 조세 부과형(régime réel des BIC)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이 이외의 경우들로, 농민 기업 또는 association 등이 관광업 경영의 주체가 될 때 해당되는 조세 부과 형태들이 있다.
- 봉급 생활자도 아니고 농민도 아닌 사회적 지위
 - 지프 또는 피블레를 임대하여 얻는 연간 매출고가 150,000프랑 이하이며 총 수입의 50% 이하가 되는 경우는 상업활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한도를 넘어서면 상업활동으로 등록을 하고 이에 대한 사회 분담금을 내야 한다.
 - 지프 또는 피블레가 아닌 다른 관광 영업의 경우는 상업활동으로 간주된다.
 -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직업 활동을 겸할 시는 그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사회 분담금이 달라진다.
 - 예를 들면, 한 봉급 생활자가 농가 주택을 관광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한 가내 수공업자(즉, 봉급 생활자가 아닌 사람)가 두 가지 이상의 관광활동을 하는 경우; 정년 퇴직한 사람이 농촌 관광업에 참여하는 경우 등이 모두 다르다.
- 농민으로서 농촌관광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
 - 과연 어디까지를 상업적 활동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농업적 활동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내린 1988년 정의에 준거하여, 농촌관광에 참여하는 농민이 두 가지 사회 보험(농민 및 상인)에 동시에 의무적으로 분담금을 낼 필요는 없어졌다.
 - 예를 들어, 지프나 피블레, 상브르 도뜨 등은 농업활동과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이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 농민으로서 분담금을 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따블르 도뜨처럼 농업활동과 연관된 관광영업 행위를 할 경우는 농민으로서 분담금을 내야 한다.

2.2. 부가가치세

- 농촌관광 분야에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호텔 영업 식이 아닌 부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식당업 등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다. 샹브르 도뜨와 같은 준 호텔업은 몇 가지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의 부과율은 경우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세금을 제외한 가격의 5.5%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경우, 농가 생산 제품 판매, 샹브르 도뜨, 현장에서 먹지 않고 싸 가지고 가는 음식물, 면적이 10m²이 하인 곳에서의 식당업 등이다. 그러나 농가에서의 식사, 우편 엽서 판매, 주류 판매 등에는 19.6%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면제되는 경우는 공짜로 제공되거나 비영리로 하는 활동이다. 가령, 지뜨나 뫼블레의 경우 매출고에 상관없이 면제되며, 농촌관광 분야에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스포츠 강사 등이 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 농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농민의 수입이 300,000프랑 이하인 경우는 면제된다.

2.3. 지방세

- 프랑스의 지방세는 직업세, 토지세(나지에 대한 세금과 건축물이 들어 있는 대지에 대한 세금 등 2종류), 주거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나지에 대한 세금: 특별히 상업용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은 농가 캠핑의 경우에 적용
 - 건축물이 서 있는 대지에 대한 세금: 농업용 건물은 이 세금에 대해서 면제가 되나 지뜨나 뫼블레의 경우는 적용

- 직업세: 농업활동은 직업세가 면제이나 관광업의 경우는 당연히 적용, 그러나 면제가 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몇 계절에 국한하여 샹브르 도뜨를 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지뜨도 직업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꼬뮌 총 인구가 2,000명 이하인 경우, 연간 6개월 이하로 빌려주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그밖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에게도 면제가 된다.
- 주거세: 지뜨 등의 관광용 건물에 적용, 즉, 대여자들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 이 네 가지 주요 세금 외에도 적용되는 지방세들이 있는데, 체류세(몇몇 꼬뮌에서는 자신의 꼬뮌에 묵어 가는 관광객들에게 하루밤에 얼마씩-대개는 1인당 1프랑에서 7프랑 사이-체류세를 내게 함); 쓰레기 수거 세금; 텔레비전 시청료 등이 부과된다.

2.4. 주세

- 음료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판매하는 음료의 성격에 해당하는 면허를 얻어야 한다.
 - 1급: 알코올이 안든 음료이거나 1.2%이하
 - 2급: 발효 음료로 증류가 안된 음료로 1.2%에서 알코올 농도가 3% 사이
 - 3급: 3% 이상 18% 이하
 - 4급: 럼, 증류주
 - 5급: 기타

3. 법률, 행정, 상업, 연합체 관련 규칙들

3.1. 보험

- 보험은 손님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필수적이며 관광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기업을 구제해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프랑스

의 경우 보험이 중요한 이유는 농촌관광에서 승마 등과 같은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영업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 민사책임보험: 부주의나 태만으로 제3자에 의해 야기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개인 자격으로 또는 기업의 영업 행위에 대해 가입할 수 있다. 만약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을 경우 형사 책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 일반적으로 지프 드 프랑스와 같은 체인 형식으로 운영되는 농촌관광의 경우는 그 체인 연합의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 이용하는 보험 형식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영업주가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한다. 특히 어린이 손님을 받는 경우 그 부모들로 하여금 보험을 가입하게 할 수도 있다. 손님뿐만 아니라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해당되는 보험을 들어야 한다.
- 농민의 경우 Caisse d'assurance agricole에 기본이 되는 보험을 들 수 있다. 농가 재배 생산물을 사러 온 손님 또는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식당에 온 손님이나 숙소를 임대한 손님들에 대해서는 순수한 의미의 농업활동이 아니므로 이 농민용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 한편 스포츠 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보험, 가축이 제멋대로 돌아다니면서 낸 사고에 대한 보험 등이 있다.
- 이 외에도 화재 보험, 자동차 보험, 기타 관광 활동과 관련된 여러 질병에 대한 보험, 스포츠 활동에 사용되는 기구(예를 들면, 자전거, 카누 등)에 대한 보험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보험이 있다.

3.2. 문화 유산 보호

- 아름다운 경관, 건축물, 유적지, 공원, 정원, 민속놀이, 민속무용, 민요, 민속 의상, 토속 동물 등은 전부 문화 유산이며 농촌관광의 중요한 자

원이다. 따라서 유럽,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들이 있다.

■ 경관 보호

- 프랑스는 1993년 1월 8일 경관의 보호와 운영이라는 개념의 법률을 도입하였다. 이는 도시계획을 하거나 건축허가를 내는 데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이외에 프랑스에는 147개의 자연보호지구가 있다. 토지소유자들이 원하여 지정된 자연보호지구들도 있는데, 이는 Réserves Naturelles de France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 국립 산림청(Office National des Forêts)은 경관 및 환경 보호, 목재 생산, 시민 휴양처 제공을 목적으로 4.4백만 헥타르의 공공림을 관리하고 있으며, 점점 관광 진작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 유적 보호

- 프랑스의 역사 유적 목록에 유적으로서 기록되면 그 소유주들이 조세에 있어서 혜택을 얻거나 수리를 하는 데 국가 보조금을 받는 등 유리하게 된다. 이는 문화부 관리 소관이며 농촌관광의 중요한 자원 보전을 위한 토대이다.

3.3. 건축 허가

- 농촌에 집이나 다른 건축물을 짓는 것은 도시계획법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며, 경관보호를 위한 몇몇 기준들도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코뮌)의 소관이다.

3.4. 표지판

- 도로 표지판과 구별되어야 하며 도로 이용자들에게 방해되지 않는 표지판 설치 규율은 도청(데партамент)에서 제정하며 적용한다.

- 공유지의 경우, 도시나 마을의 위치 등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에 도청의 장치설치국(direction départementale de léquipement)에서 담당한다.
- 사유지의 경우, 농촌에서 일체의 광고 표지판 설치는 금지되어 있다. 단지 몇몇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관들에 대한 표지로서 차고, 주유소, 호텔, 식당, 농가 숙소, 캠핑, 샵브르 도뜨, 승마 농가, 농산물 직판소 등이다.
 - 이때 표지판들은 업소의 5km 이내, 역사 유적에서 100m 이상 떨어져 설치되어야 하며, 표지판의 크기는 1.5m²를 넘지 않아야 한다. 설치한 표지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도로 표지판과 혼동되는 모양이 되어서는 안되며 국도변 20m 이상, 고속도로변에서는 100m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 보호구역 안에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Architecte des Bâtiments de France에 의견을 묻고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5. 안전 수칙들

■ 건축물 안전 검사

- 관광 관련 활동들은 안전 규칙을 필요로 하며 건축물마다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이 모두 다르다. 건축물 안전 검사는 내무부 소관이며, 도청의 여러 국에서 관리 적용한다.
- 공공용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도청의 장치설치국(direction départementale de léquipement)이 1차 검열을 하고 안전위원회(도지사를 대신하여 직원 1명, 꼬핀의 장, 경찰서, 소방서, 건축물 책임자로 구성)가 이를 심사한다.

■ 숙박업소의 건축물 관련 규제

- 숙박업소들은 안전위원회의 검열을 거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다른 위원회들에서 지시하는 그리고 법률로 정해진 몇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계단의 폭은 최소한 90cm 이상을 확보할 것, 튼튼한 손잡이가 있어야 할 것, 전화기 밑에는 응급 구조처들의 전화번호와 소화기를 비치할 것 등이다.
- 지프 드 프랑스는 자체 회원 현장을 통해 몇몇 규칙들을 제정해 놓고 있는데 예를 들면, 2인용 침실은 최소한 12㎡ 이상의 면적이어야 할 것, 3인용 침실은 15㎡ 이상의 면적이어야 할 것 등과 같다.
-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조건도 명시되어 있는데, 출구가 잘 배치되어 있을 것, 10m 이상의 출구 없는 복도는 금지할 것 등과 같은 건축 규정이다.
 - 20명 이상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건축물: 문폭 0.9m 이상
 - 20에서 50명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건축물: 문폭 1.4m 이상, 방화벽과 방화문, 안전등, 알람장치 설치
 - 5사람 이상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방: 12㎡이하이거나 1인당 5㎡이하의 면적은 금지
 - 10사람 당 최소한 1개의 화장실, 1개의 샤워시설이 의무. 계단 높이는 최대 0.2m로 제한. 입구, 각층의 출구, 각 방에 건축물 내부 구조에 대한 지도 부착 등

■ 숙박업소의 영업 관련 규제

- 적어도 개업 2개월 전에 도청에 신고,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는다.
- 이 업소에서 조직하는 5밤 이상의, 4살 이상이 되는 12명 이상 아동의 합숙에 대해서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신고한다.
 - 이 아동들 중에 12살 이하가 있을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비상시에는 간호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 만약 이 업소가 정해진 법률에 맞지 않는 영업을 하거나 아동들이 학대를 받을 경우는 도지사가 강제로 폐소시키며 형사 처벌한다.

■ 안전과 관련하여 명시되어 있는 준수 규칙들

- 안전한 장소에 세워진 건물일 것,
- 반드시 수도물을 사용할 것,
- 음식물은 다양하고 균형잡힐 것,
- 14세 이하 주류 소비 금지,
- 공공장소와 차안에서의 금연,
- 세면기 등은 적어도 10명당 하나 설치,
- 쓰레기 처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 방화시설 갖출 것,
- 난방은 적어도 20도 이상,
- 6살 이상일 경우 여야와 남아를 분리,
- 한 방당 침대를 6개 이상은 놓지 않고 침대 간격은 40cm이상 둘 것,
- 여야용 남아용 분리 된 간호실을 둘 것 등
- 아동들은 전부 예방 접종을 받고, 이리이러한 운동을 해도 된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사전에 받아야 함.
- 지체 장애자를 맞는 업소 : 문의 너비, 계단 너비, 방의 구조, 욕실, 복도 등에 대한 규제 내용들이 있음.

■ 자연 탐구 프로그램(les classes de découvertes)

- 이 경우는 반드시 안전위원회의 검열을 거쳐야 한다. 청소년체육부의 승인서를 획득해야 하며 이런 다음에 다시 검열관 방문하에 재검열을 받아야 한다.
- 반드시 분리된 식당 시설과, 교실, 놀이 마당(일종의 작은 체육관 같은)을 갖춰야 한다.
- 교실은 천정 높이가 최소 3m는 되어야 하며 40명 아동을 받아들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 면적이 54m²가 되어야 한다. 남아와 여아용으로 분리된 간호실이 1층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때 간호실이 외부로 바로 통하는 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

■ 농가 (농업) 방문 프로그램

- 주차장이 안전한 곳에, 나이가 든 사람들이나 장애자들을 위해 방문하는 현장에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돌아보는 코스 역시 안전하게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 놀이공원: 나무나 식물 등은 위험 없이 식수되어 있어야 하며 모래를 깔아 놓았을 경우는 매일 다시 쓸고, 1년에 3회 완전히 겉과 속을 뒤집어 놓아야 하며, 1년 단위로 새 것으로 갈아야 한다. 보수 정비내용을 적은 장부를 만들고 관리해야 하며, 놀이공원 약도를 작성하는데 이에는 놀이공원에 설치된 시설물들을 제작한 회사들의 주소들도 함께 적혀 있어야 한다. 이용자들에게 설치물의 내용과 만약의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의 내용을 알리며, 시설물들을 이용하는 대상의 적당한 나이대를 밝혀 놓아야 한다. 놀이공원 입구 또는 시설물마다 관리 총 책임자의 주소를 밝혀 놓아야 한다.
- 수영장: 수영장은 돈을 받고 영업하는 것과, 숙박시설에 부가하여 숙박시설 이용자에게 공짜로 제공되는 수영장으로 나누어지는데 후자의 경우는 전자와는 달리 수영 강사를 반드시 뒤야 할 필요가 없고 위생 관련 준수해야 할 규칙 내용들도 그리 많지 않다. 예를 들면, 수영장 바닥이 흰히 보여야 하며 물이 깨끗해야 하며 매일 청소를 해야 된다는 수준에 그친다. 그러나 두 종류 모두 샤워 시설을 갖추는 것은 거의 의무 사항이다.
- 수영 가능한 기타의 곳들: 세 가지 종류로 나뉘지는데 수영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곳, 수영하기에 위험하여 금지된 곳, 양쪽 모두가 아닌 것으로 원하면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영할 수 있는 곳이다.
 - 업소에서는 수영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을 감시해야 한다. 감시는 자격을 갖춘 자(예를 들면, BNSSA 자격증이 있는 사람)가 해야 하며 어린이가 혼자서 물에 들어가도록 해서는 안된다.

- 아동들이 6세 이상일 경우 8명 당 1명, 6세 이하인 경우는 5명 당 1명의 자격자가 함께 수영을 하면서 아동들을 감시해야 한다.
- 수영하는 아동들이 12세 이상일 때는 수영가능구역을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위험이 없다고 판명되는 해변에서는 초록색 깃발, 오렌지색 깃발은 위험이 좀 있으나 감시를 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붉은색 깃발은 수영금지를, 검은 깃발은 물이 오염되어 있음을 알리는 신호로 통용된다.
 - 승마: 환경, 근무자 및 이용자의 안전, 말의 안전과 관련된 몇 가지 주의 사항들이 있다.
 - 근무자: 말들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데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어야 한다.
 - 이용자: 정해진 복장을 갖추어야 하는데 특히 모자는 의무 사항이다. 구급함, 응급 상황 발생시 걸 수 있는 전화도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금지한다. 만약 사고가 난 경우 민사 책임에 있어서, 이용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이용자의 능력을 과하게 평가한 것도 업소 주인의 잘못이 될 수 있다.
 - 말: 젊은 말은 가끔씩 승마에 사용을 해야지 오랜 시간 계속 승마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 손질을 잘 해 주고 잘 보살피 주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햇볕아래 오랜 시간 끈에 묶어 놔두서는 안되며 원하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처리된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한다. 매년 마구를 위생 소독하고 쥐를 잡아야 한다. 승마장의 모든 말, 조랑말, 당나귀들은 일련 번호를 갖추고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3.6. 위생 수칙들

- 일반적으로 위생 수칙들은 도청의 위생및사회국에서 관리하는데, 음식물 위생과 관련해서는 다른 국들에서도 관여를 한다. 유럽연합, 프랑스 수준에서 여러 규율들을 제정해 놓고 있다.

■ 음식물과 관련된 위생 준수 원칙

- 생산자나 중간 과정에서 변형을 가하는 사람들(예를 들면, 요리사)이 위험을 감지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단들을 행해야 함을 책임사항으로 둔다. 기본 골조가 되는 것은 1993년 제정된 유럽연합 차원의 규칙이며 프랑스 차원에서 이를 보충 내지는 보완하였다.
 - 식당업: 농가 식당(Auberges à la ferme)은 철저히 이 수칙들을 준수해야 하지만, 파블르 도뜨 등은 약식 규칙들의 적용 대상이다.
 - 검열: 손님들에게 제공한 음식물의 일부를,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검열에 보여 주기 위해 5일 동안 보관해야 한다. 문제 사항이 적발될 경우 미생물 분석을 하기 위함이다. 청소와 세균 박멸에 대한 계획표들을 갖추고 실행 해야 한다. 이에는 담당자가 누군지, 언제 어떤 주기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 a. 부엌의 설치와 관련된 규칙들
 - 부엌은 2.5m의 높이에, 2.2m의 환풍을 위한 높이를 더한 높이로 건축. 바닥, 벽, 천정은 매끌매끌하고 방수가 되며 씻어 낼 수 있는 재료로 건축. 특히 바닥은 미끄럼 방지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강제 배기 시설 설치 의무. 조명은 충분히 밝아야 함. 재료들을 받아서 쌓아 두며 일종의 전실(前室), 채소 씻는 곳, 준비실, 세탁실, 씻어 둔 그릇 재어 두는 곳 등 필요. 손씻는 곳은 따로 설치하는 곳이 좋고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장소를 따로 뒤야 함.
 - 위생과 관련하여 세제 등은 별도의 곳에 열쇠로 잠궈서 보관. 매일 청소. 파리, 쥐 등 박멸, 화장실은 음식물들이 다니는 코스에 직접 노출되어서는 안됨. 옷을 벗어서 말기는 곳이 있으면 좋음. 직원들은 깨끗하고 밝은 색의 옷 착용 및 모자, 장갑 등 착용.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호흡기, 전염성 등의 질병이 없어야 함.
 - b. 살균
 - 하수처리에는 두 가지 처리망이 있는데 하나는 빗물 처리망, 다른 하나는 쓰레기 물이 나가는 처리망. 부엌 물을 빗물 처리망에 흘러

내 보내면 안됨. 최소한의 시설로 화장실 물과 부엌 설거지물, 목욕 물 등을 한꺼번에 받아서 처리하는 시스템.

- 지트가 한 마을에 여럿일 경우는 집합 처리 시설을 하는 것도 좋을 것임.
- c. 동물과 관광
 - 승마 등 동물을 이용하는 관광업을 할 경우, 이웃 주민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함. 동물 학대 금지, 예방접종 의무화, 사료는 오염되지 않도록 잘 보관, 사체가 생기는 경우 40kg 이상일 때는 자체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전문 업체에 맡겨야 됨.

3.7. 상업 규칙

■ 저작권

- 모든 음악 공연은 저작자로부터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료를 물어야 한다. 단,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 이상이 지났으면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 관리하는 저작권협회(Société des Auteurs, Compositeurs et Editeurs de Musique)에 적어도 15일 전에 신고하는 경우는 저작권료의 20% 할인이 있다.

■ 상표

- 상표 또는 광고 내용이 과장되어서는 안된다. 상표는 등록을 하는 것이 좋고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등록 가능하다.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이름인지 아닌지는 국립산업저작권협회(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를 통해 알 수 있다.

■ 숙박업소의 등급 구분

- 이 일을 맡아서 보는 곳은 도청의 관광위원회(Commission Départementale de l'Action Touristique)이다.
 - 호텔은 6등급으로 구분("별 없음"에서 호화 등급의 별 4개)

- 호텔업(즉, 수건 등 제공, 청소 대행, 아침 식사 제공과 같은)과 달리 빌라, 아파트, 원룸 등을 대여만 할 경우 5등급으로 구분(별 하나에서 5개)
- 이상의 (행정) 등급에다가 특정 마크(로지 드 프랑스, 지뜨 드 프랑스 등의 등급 구분이 또 더해 질 수도 있다. 이 행정등급과 특정 마크가 주는 등급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한 협정이 있었는데, 그 결과 지뜨의 경우는 국가가 지트에다 그 결정과정을 이임한 바 있다.
- 만약 한 개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의 등급을 받으려 할 때는 기초자치단체 사무소에 요청서를 제출하면 등급 갱신이 가능하다.

■ 체류 계약

- 숙박객과 주인과의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내용이 명기되어야 한다.
 - 집주인의 이름, 주소, 빌려주는 숙박처의 위치, 빌리는 사람의 이름, 주소, 빌리는 조건, 기간, 도착 및 출발 시간, 가격, 지불 방법(현금, 카드), 보증금 액수 및 돌려주는 방법, 들어야 할 보험, 경우에 따라 이 숙박처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도 명시한다.
 - 가격은 양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며, 만약 원거리에서 사전에 예약하는 경우 7일 안에는 벌금을 물지 않고 해약이 가능하다. 보증금의 액수가 빌리는 비용의 총액수, 한달 빌리는 액수보다 커서는 안된다.

■ 체류 조건

- 빌리는 사람이 도착하면, 숙박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체크하는 서류를 공동으로 작성한다. 만약 이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숙박처의 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때 필요하다면 전기 계량기 등의 수치를 확인하기도 한다.
- 일단 숙박처를 빌려 주고 나면 이용권리가 빌리는 사람한테로 넘어가므로 주인도 함부로 드나들지 못한다.

- 보험과 관련해서는 손님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손님이 외국인일 경우 경찰서에 넘기는 신상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 영수증

- 손님이나 주인 양자 모두에 의무 사항이다.

4. 인력 교육

- 호텔업 및 식당업 종사자, 여행사 직원, 관광버스 운전자, 가이드, 통역사, 체육 및 문화 활동 강사 등에 대한 교육은 관광에서 매우 중요하다. 일정 교육(과정)을 받고 나면 학위증 또는 자격 증명서가 발급된다.

- 영어는 거의 필수이며, Brevet de Technicien Supérieur du Tourisme과 Brevet dAptitude aux Fonctions dAnimateur의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자주 요구되는 학위이다.

- 더 나아가 일단 이런 학위를 취득하고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주제에 대한 수업을 받으면서 전문 지식을 넓히는 과정이 별도로 있다.

■ 농업관광(agritouristique) 교육

- 농촌관광업은 관광업의 한 분야로서, 농촌관광초보교육과정은 농업부 산하 400여 개의 기관에서 행해진다. 직간접적으로 150여 개 이상의 과정들이 농촌관광을 다루고 있다.

- 성인농업관광과정은, 농촌관광의 한 분야로서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단기 기초 과정, 더욱 장기간의 관광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과정, 특별한 능력 취득을 위한 전문 과정 등이다.

■ 학위, brevet, 자격 증명서

- 5개의 등급이 있다.

- 5등급과 4등급: 우리나라로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 자격이 있는 자
 - 3등급: 대학에 들어가서 2년 공부
 - 2등급: 대학에 들어가서 4년 공부, 학부 마친 정도
 - 1등급: 대학에 입학하여 5년 이상 공부한 자
- 교육부, 문화부, 농업부, 노동부, 청소년 체육부, 내무부 등에서 여러 종류의 관련 학위를 발급하며, 이 이외에 연맹이나 단체들에서 나름의 자격증 또는 학위를 준다.
-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돈을 받는 관광업 종사자(예를 들면, 체육 강사)는 청소년 체육부에서 발급하는 국가 자격증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그러나 자격증에 준하는 실력 및 경력이 인정될 때는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다.
 - 체육 강사, 직원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는 업소주도 일정 수준의 자격증을 갖춰야 하는데, 예를 들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뜨를 운영하는 사람이 지뜨 드 프랑스 마크를 달기 위해서는 Brevet National de Premiers Secours 와 Brevet dAptitude aux Fonctions dAnimateur 자격을 갖춰야 한다.
 - 관광 가이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국가가 인정한 역사 유적이거나 국가 소유의 박물관 안에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자격은 6등급으로 나뉘짐)만이 가이드를 할 자격이 있다.
 - 수영장, 해변이나 강변에서의 수영 안전 감시 요원에게도 자격증이 필요하다. 물론 무료 수영시설에서는 안전감시요원을 두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 민사상의 책임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한다.

5. 연합과 관련되는 규칙들

- 농촌관광업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단독 경영을 할 수도 있지만 지뜨 드 프랑스 등과 같은 여러 연합체에 가입함으로써도 가능한데 이 경

우 지프의 현장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 1년 단위로 재계약(계약 연장 또는 연합에서 탈퇴)
 - 가입자는 가입하는 연합체에 대해서 규칙들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연합 위원회(연합 멤버들과 행정 책임자(공무원)들로 구성)에서 가입 희망자가 규범들을 준수했는지를 점검, 가입을 승인, 등급을 부여
 - 현장 역시 소비자 기호 변화와 외부 조건 변화에 맞춰 개정
- 가입자는 연합에 일정액의 분담금을 내며, 총회에 참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위원회 등에도 참여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연합에 가입한 업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업체가 최소한 몇 년간은 반드시 연합 구성원으로 머물러 있도록 강제할 수 있다.
- 연합에 가입한 경우의 책임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 건축주가 자기 집을 수리를 하려고 하는 경우는 연합이 요구하는 기준에 합당하도록 할 것
 - 연합으로부터의 감사(불시 감사도 있음)를 받아야 할 것
 - 연합이 발간하는 가이드 책자에 의무적으로 이름과 주소 등 영업 내용을 올릴 것
 - 한 업체의 영업 내용이 다른 가이드 책자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소속 연합명을 밝힐 것
 - 한 업체가 여러 연합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들 연합간에 협정이 맺어진 경우에 한함.
 - 연합들은 고유의 로고를 가지며 광고 및 표지판 등에다 이를 반드시 표시할 것
 - 연합에 가입한 업소주가 그 옆에 연합에 가입하지 않고 운영하는 다른 업소를 가져서는 안됨.
 - 가입자는 정기적으로 직업 교육을 받을 것

- 연합이 데빠르뜨망 체인 단위로 또는 전국 체인 단위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응할 것
-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제품을 연합 수준에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것
- 가입 업체가 규칙들을 잘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명될 수 있음.
 - 제명은 연합의 도 지부에서 결정되는데, 제명 업체가 승복하지 않을 경우는 전국 본부에서 재심, 결정
 - 제명되고 나면 연합 로고를 이용한 표지판 등이 몰수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당시까지 지원되었던 보조금을 물어내거나 낮은 이자로 빌린 돈을 갚아야 함.

독일의 농촌관광 정책

1. 독일의 관광정책 개요

- 유럽 국가와 독일에서는 60~70년대의 경제적, 사회적 범주에서 다루었던 관광정책으로부터 환경적 측면까지를 고려한 관광정책을 추구하는 추세이다.
- 독일의 전반적 관광정책은 공간계획(유럽, 연방공간계획, 주발전계획, 광역계획, 도시계획)과 전문계획(교통계획 등)을 토대로 자연과 문화의 잠재력을 고려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농촌관광 정책은 별개의 부서나 규정 등이 없이 아래 소개된 정책들이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며, 독일농민연맹(DBV)을 주축으로 국가 차원의 독일농업협회(DLG)와 각 주가 밀접하게 협조하고 있다.

1.1. 유럽 관광정책

- 유럽연합은 1984년에 처음으로 관광분야를 경제적 측면에서 다루었으며, 이는 다시 신속하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 측면을 고려한 소위 유럽관광정책으로 변경 추진되고 있다.
- 1992년 유럽공동위원회는 관광촉진정책(1993년 1월부터 3년간, 재정지원 18 Mio. ECU)을 결정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유럽공동체 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관광업의 다양성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 농촌관광 정책에 해당하는 촉진정책은 EAGFL(Europaeischer Ausrichtungs- und Garantiefonds fuer die Landwirtschaft- Abteilung Ausrichtung/ Operationelles Programm zur Entwicklung des laendlichen Raumes: Massnahme A: Dorferneuerung, laendliche Infrastruktur und Agrartourismus) 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주요 목적은 농촌지역의 관광산업-일자리 창출과 국경이 없이 농촌관광 산업에 해당하는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에 대한 투자와 이에 해당하는 특별 마케팅 활성화이다.
 - 이를 위해 유럽 농촌지역 관광발전계획을 수립하여 1989년에서 1993년까지 2,3 Milliarden ECU를 투자하였다. 유럽 낙후광역지역은 1~5지역으로 나누었으며, 특히 독일은 옛 동독지역(5b지역)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 한편 유럽공동체의 관광 촉진정책과 관련 있는 기구는 아래와 같다.
 - EFRE: 관광산업에 관련한 유럽 광역발전기구
 - ESF: 경제, 사회발전기구로 특히 직업전문교육을 위해 투자하는 기구
 - EAGFL: 유럽의 농업지역 발전을 위한 기구
 - EIB: 유럽투자은행

1.2. 독일 연방정부 관광정책

- 독일의 공간계획법 제2조에는 공간균형발전을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농촌이 자연친화적 휴가, 휴식지역으로 발전하고 이러한 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관광산업을 위한 기본 정책 프로그램은 이미 1975년 부터 아래의 5개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 지속적인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여건을 확고히 한다.
 - 독일의 관광산업의 능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 국민의 관광에 광범위한 참여를 위한 가능성을 향상시킨다.

- 관광산업을 국제적으로 공동 활성화한다.
 - 관광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개선한다.
- 독일의 관광산업은 주로 경제부처와 건설부가 중심이 되어 각 주의 해당관청과 밀접하게 공동으로 추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경제기술부의 광역촉진정책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연방정부와 각 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경제구조개선정책(GA-Gemeinschaftsaufgabe von Bund und Laendern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은 개인 관광산업 촉진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 이는 관광교육, 기반시설-특히 새로운 생상품과 서비스업종에 투자를 집중하였다(1991년에서 1999년까지 총 투자액 16,307백만 DM 중 숙박업에 개발지원금 3,729백만 DM). 물론 여기에는 관광산업에 관련한 사회간접시설(휴양관, 공원, 수영장, 자전거, 인도) 건설 등의 지원금도 포함된다.
 - 1991년에서 1999년 중반까지 관광시설물에 투자한 총 6,938Mio. DM중 GA의 지원금은 4,683Mio. DM이 넘는다. 경제기술부에서는 2000년도부터 관광프로젝트 촉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연방정부의 각 기관마다 아래 <표 1>과 같이 각각 책임이 다르게 주어지고 있으며, 그 외에 연방정부 산하에 독일관광조합, 독일관광연맹 등이 있으며 각 주, 도시와 밀접하게 관광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 농림부의 농업관광촉진정책
- 농업구조와 산간지역보호 향상정책(GA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Kuestenschutzes)이 주로 해당한다. 이는 유럽연합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농촌관광 촉진정책 프로그램은 아래의 <그림 1>와 같이 볼 수 있다.
 - 이 그림과 같이 재정지원은 유럽연합과 독일 연방정부, 주 정부가 공동으로 일정한 비율로 지원하며 농촌관광 산업 분야는 아주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독일의 부처별 관광정책

담당기관	내 용
경제, 기술부	관광촉진정책 통괄 독일관광센터 운영 관광산업 향상대책: 교육향상, 관광학과, 독일관광마케팅등
소비자보호, 영양 및 농업부	농업관광촉진정책: 농업구조와 산간지역보호 향상정책GA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Kuestenschutzes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가족, 청소년 휴양시설 촉진정책
환경부	환경과 관광 프로젝트 환경친화적 관광
교통부	관광지 도로망 대중교통 연결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건설부	관광, 휴양지 계획 각 주는 공간조정에 고려 교통계획에 있어서 자연보호

유럽연합 EAGFL

연방정부 GA (조정, 마케팅, 홍보)

관련단체

독일농업연맹(DBV),독일농업협회(DLG), 농촌관광홍보팀 (Land in Sicht Verla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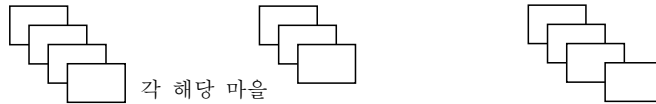
각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조정, 마케팅, 홍보

재 정 지 원

유럽연합

연방정부

주 정부



<그림 1> 독일의 농촌관광 촉진을 위한 투자 구조

1.3. 주 정부

- 독일은 지방자치가 발달된 대표적인 나라이므로 관광정책 또한 각 주마다 공간적 구조에 맞게 추진한다. 특히 산간지역, 포도 농사지역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농촌관광 정책은 연방 정부의 소비자보호, 영양 및 농업부(BMVEL)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 농촌관광 관련 규정

- 독일에서 농촌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법은 없다. 독일은 전 국토가 연방 건축기본법(Baugesetz Buch-BauGB)에 의하여 지구상세계획과 토지이용계획에 의거해 허가하고 있으며 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지역은 연방 건축기본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소위 농촌지역은 외곽지역으로 정해져 있어서 토지용도 변경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 관련 법규로는 공업법(Gewerberecht), 음식업종관련법(Gaststaetterecht), 세금법(Steuerrecht), 노동법(Arbeitsrecht), 위생 관련 세부규정(hygienische Verordnung) 등이 있다. 이들 법은 농촌관광업 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 해당하는 법이다.
 - 특히 일반 도시지역이 아닌 낙후지역인 농촌관광지역은 토지이용변경, 건물용도변경 등이 매우 엄격하여 농촌관광 산업에 제약요인이 되기도 하며, 또한 기본적으로 위에 언급한 총 6개의 법규정과 그 외에도 도시 자체 별로 해당되는 법, 규정들을 합하면 너무 복잡하여 2년 전부터 이러한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 농촌지역에 있는 농가의 용도변경(Urlaub auf dem Bauernhof), 즉 숙박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도 위의 법에 관련되며, 농촌지역에 호텔이나 음식점 허가는 지방자치단체(마을 최소단위)의 효력이 강하여 더더욱 인가가 어렵게 되어 있다.

■ 농촌관광 지도자와 시설물

- 농촌관광 지도자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며, 현재 독일 농촌관광 지도자는 대부분 여성들이다. 이 분야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농업분야 교육을 받은 자이거나 관광분야(주별로 교육 실시) 교육을 추가로 받은 자가 대부분이다.
- 농촌관광업 시설물에 대한 규정은 일반 규정(위에 언급한 법)에 의거하여야 한다. 단지 숙박업소에 대한 평가는 독일관광연맹(DTV)이 독일 농업협회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홍보책자나 인터넷 등에 홍보하고 있다.

■ 숙박 형태

- 다른 관광업종과 다르게 농촌관광업에는 대부분 농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농가 민박이 주를 이룬다. 1991년 12.7백만 명의 숙박객에서 2001년에는 27.4백만 명의 숙박객으로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2> 독일의 농촌관광 숙박 형태

형 태	내 용
Hotel	최소한 식당과 휴게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일정한 수의 침실이 있어야 한다. 식사는 최소한 아침식사 이상
식당을 겸비한 Hotel	Gaststaette라 하며 이는 호텔에 준하지만, 휴게실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되며, 대부분 아침식사가 제공된다
Pension	호텔이나, Gaststaette와 달리 투숙자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며, 조건에 따라 아침식사가 제공되기도 한다.
휴양, 휴가, 교육숙소	단체나 회원 등에게 제공되는 곳으로 식당과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있다
민박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최근 기업화된 대규모 민박단지도 이에 해당한다
휴양소	건강을 위한 휴양소이며, 병원에 준한 시설이다.
기타	Camping, 청소년 회관, 개인 가정집

2. 독일의 농촌관광 현황과 전망

2.1. 독일 농가민박의 일반 현황

- 소비자보호·영양·농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독일내 농가민박은 2001년 현재 27.4백만 숙박으로서 매출 총액은 약 10억 유로에 해당한다.
 - 1999년 농업통계연감에 의하면 독일의 농가민박은 총 14,746개소로서 농업종사자의 3.12%가 농가민박을 겸하고 있다.
 - 농업종사자수와 비교하여 볼 때 농가민박비율이 높은 주는 북독의 쉘레스비히-홀스타인주(6.49%), 남독의 바이에른주(4.62%), 중독의 라인란트-팔쯔주(3.97%), 동독의 맥클렌부르크-포아폼메른주(3.44%)를 들 수 있다.
 - 농가민박업소수를 비교하면 바이에른주가 7,131개소로서 독일 전체 민박업소의 절반(50.3%)을 차지하며, 바덴뷔템부르크주가 2,510개소(17.7%)로 두 번째, 라인란트-팔쯔주와 쉘레스비히홀스타인주가 각각 1,410개소(9.9%), 1,343개소(9.5%)로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 농가민박의 특성
 - 농가민박은 여름철에 집중되며 평균 15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농가와 직접 예약하고 있다.
 - 농가민박 이용자의 66%가 어린이를 데리고 방문하며 가족형, 자연체험형, 휴식형 관광행태를 보이고 있다.
 - 1회 여행하는데 따른 평균 경비는 1인당 607유로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 농가민박이용자의 특성
 - 가장 선호하는 활동: 지역답사, 지역음식, 긴장완화, 편안한 잠
 - 가장 중요 방문 동기: 스트레스 해소, 해방감, 자유시간, 레크리에이션

<표 3> 독일 농가민박업소¹⁾ 현황

	농업종사자 (a)	농가민박 제공하는 농업종사 자 (b)	농가민박 종사비율 (b/a)	침대수	업소당 침대수
바덴뷔템베르그주	75,850	2,510	3.31%	17,239	6.9
바이에른주	154,189	7,131	4.62%	53,194	7.5
브란덴부르크주	7,008	206	2.94%	1,836	8.9
헤센주	29,669	200	0.67%	933	4.7
멕클렌부르크-포아폼메른주	5,176	178	3.44%	1,360	7.6
니더작센주	65,650	1,071	1.63%	6,450	6.0
놀트라인베스트팔렌주	56,366	287	0.51%	1,382	4.8
라인란트-팔츠주	35,475	1,410	3.97%	7,922	5.6
자르란드주	2,066	24	1.16%	266	11.1
작센주	7,968	220	2.76%	1,507	6.9
작센-안할트주	5,100	45	0.88%	331	7.4
슐레스비히-홀스타인주	20,706	1,343	6.49%	12,716	9.5
튀링엔주	5,150	114	2.23%	673	5.9
도시 주(베르린 등 3개 시)	1,617	7	0.43%	34	4.9
계	471,960	14,746	3.12%	105,843	7.2

자료: 독일연방통계청, 『농업통계연감 199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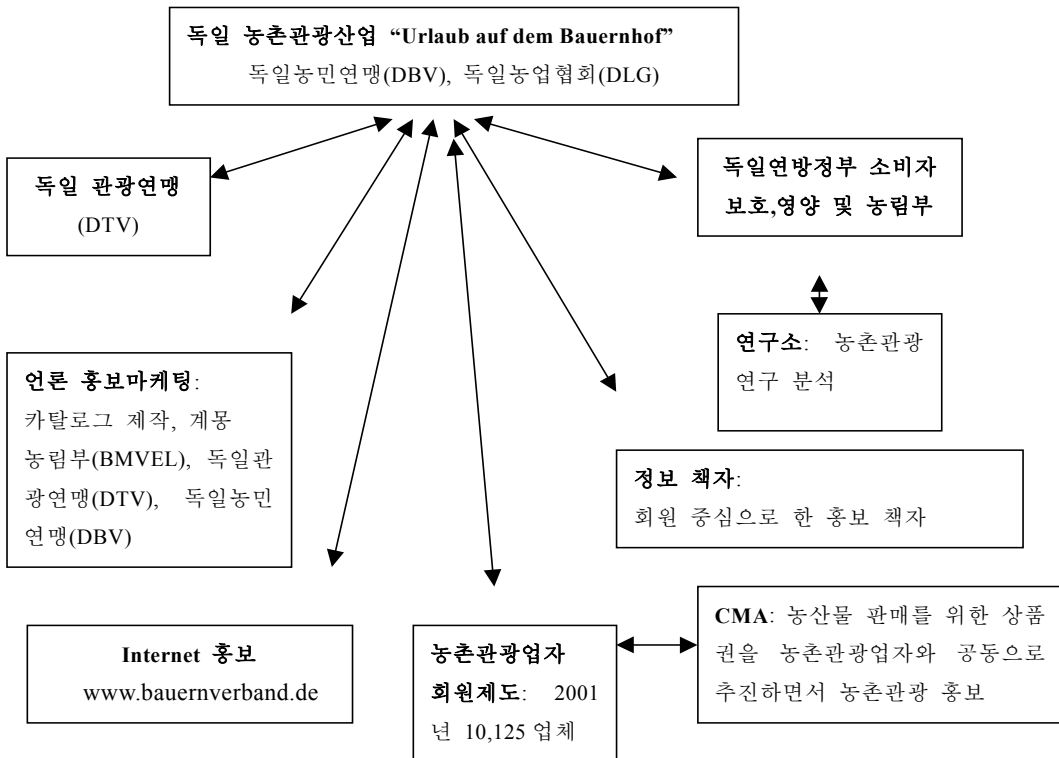
주¹⁾: 2ha 이상 농토 소유 농가의 민박 경영을 기준으로 한 통계. 즉, 2ha 미만의 농토를 경작하거나 전혀 경작하지 않는 민박업소는 제외된 수치. 전체 농가민박업소의 수는 20,000개소쯤으로 추정.

○ 농가민박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사항

- 1.청결/2.합리적 가격/3.현대식 화장실/4.넓은 방과 좋은 분위기/5.분위기 있는 가구/6.개인 서비스/7. TV·라디오/8.부대서비스/9.편안함

2.2. 농촌관광산업의 전망

- 독일의 농촌관광산업은 지난 2001년 광우병사건 등으로 약간 주춤하였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복잡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촌관광은 도시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도시인들의 자연에 대한 의식변화와 평온하고 깨끗한 기후를 즐기려는 욕구 등의 관광의식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의 농촌관광산업은 공간적, 행정적 범위를 초월하여 공동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하고 신속한 정보를 통한 홍보산업과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네트워크가 농촌관광산업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 2>는 독일의 전체적인 농촌관광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그림 2> 독일의 농촌관광 흐름도

3. 독일의 농촌관광 담당 기관 및 단체

- 독일 연방정부 차원에서 농촌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은 소비자보호·영양·농업부이며 주 정부 차원에서도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서 농촌관광을 담당하고 있다.
- 독일에서 특히 농촌관광이 발달되어 있는 주는 남부 독일의 바이에른주와 바덴뷔템부르크주, 북부 독일의 쉘레스비히홀스타인주와 니더작센주를 들 수 있다. 독일 전체 차원의 대표적인 농촌관광 분야 민간조직은 독일농민연맹과 독일농업협회를 들 수 있다.

3.1. 독일농민연맹 산하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 협의회

-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 연방협의회(Die Bundesarbeitsgemeinschaft fuer Urlaub auf dem Bauernhof und Landtourismus in Deutschland e.V.)는 농촌관광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독일농민연맹 소속 기구이다. 주 정부 차원 및 지방 차원의 농촌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를 포괄하고 있다.
- 협의회는 농가민박을 촉진·홍보하고 농가민박 종사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주 차원의 관련 단체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설립되었다.
- 아울러 농가민박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내부 협력 촉진도 주요 과제중 하나이다.
-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 연방협의회는 14개 단체회원(12개 주별 지역조직과 2개 민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1년말 현재 10,125개의 민박업소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12개 주 소속 회원은 5,431개 업소(53.6%), 독일농업협회(DLG) 소속 회원 2,070개 업소(20.4%), 농촌출판사 산하 농촌휴가센타 소속 회원 2,624개 업소(25.9%)로 분포되어 있다.
- 후원회원은 독일농민연맹, 독일여성농민연맹, 독일라이파이젠연맹(라이파이젠은 독일의 유명한 농정가 이름), 농업회의소 중앙회, 국민&라

이파이젠은행의 연방연합, 독일 스파르카세 및 지로 연합 등 5개 단체이다. 이들 후원 단체는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 연방협의회 활동을 재정적 및 내용적, 조직적 측면에서 지원한다.

○ 연방협의회는 최근 활동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계간 뉴스레터 “Land in Sicht” 발간: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에 관한 새로운 정보 제공. 매력적인 농가민박 소개. 시의적절한 테마에 관해 직접 언론을 상대로 보도자료 제공. 회원들을 위해 독일 소비자보호·영양·농업부 및 독일관광연맹과 협력하여 손님의 접대, 손실배상, 예약 취소 사유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
- 농가민박상품의 경품행사 참여: 독일농업중앙마케팅사(Die Cetnrale Marketing-Gesellschaft der deutschen Agrarwirtschaft)와 협력 경품제공행사 진행. 식품소매업체의 판촉행사시 1주간의 2인 농가민박 관광상품을 경품으로 제공
- 브로슈어 발간: 독일의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업소에 관한 카탈로그의 체계적 분류 이외에 2개의 특별한 안내 브로슈어 발간
 - “농촌-휴가-농가”: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과 관련한 일반적인 문의사항에 답하기 위해 회원단체들의 브로슈어와 카탈로그를 분류한 리플렛
 - “휴양이 체험이 되는 곳”: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을 촉진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이미지 브로슈어
- 인터넷을 통한 농가민박 정보제공
 - 홈페이지 주소 : www.bauernverband.de
 - 독일의 관광지역별로 분류해 놓은 농가민박업소 소개 및 예약 안내
- 국제농업박람회 참가: 매년 겨울 베를린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농업박람회인 “녹색주간”에 참가하여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에 관한 전시·홍보 및 직접 예약할 수 있게 함. 2001년에 박람회장에서 개최된 제2회 유럽 농촌관광 포럼에서는 연방협의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독일의 농촌관광에 대해 소개

<표 4>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 연방협의회 회원 분포 현황(2001)

단체 회원	회원수	단체 회원	회원수
계	10,125		
바덴-빌템부르크주	780	라인란트-팔츠주	398
바이에른주	2,048	작센주	132
브란덴부르크주	222	작센-안할트주	86
헤센주	258	슐레스비히-홀스타인주	345
멕클렌부르크-포아폼페른주	189	튀링겐주	299
니더작센주	405	독일농업협회	2,070
놀트라인-베스트팔렌주	269	농촌출판사 농촌휴가센타	2,624

3.2. 독일농업협회

- 독일농업협회(Deutsche Landwirtschaft-Gesellschaft e.V., DLG)는 1885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중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독일농업협회는 농촌의 생활과 농가의 수입을 개선하는 것을 주된 활동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근래 농업 관련 전시회를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 특히 닭고기·돼지고기제품(1975년부터), 농업기계 및 부속·부품(1985년부터), 축산품(1989년부터), 낙농기술 및 식품가공기술(1988년부터) 등에 걸친 4개 분야의 전시회를 모두 국제적 규모로 기획하고 있다.
 - 독일농업협회는 ‘농가에서 휴가를’사업(농촌관광활성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의 숙박시설 운영이나 품질기준에 대해 지도하고 있다.
- 품질보증마크 인증제도의 실시
 - 1972년부터 농가민박에 대한 품질보증마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품질보증마크의 교부는 국립특허기관(RAL)이 인정한 ‘DLG-점수’ 마크에 관한 기본 규칙에 따라 각 지역의 담당 위원회를 통해서 행해진다. 위원회는



최고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성 위원은 농업상담소, 농업종사자, 농협관계자, 자치단체 관계자, 지역진흥 관계자, 관광협회, 금융기관, 호텔, 음식점 협회, 소비자단체의 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되며 그 가운데 1명은 여성으로 한다.

- 위원회의 결정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한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는 결정 통지후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DLG는 심사를 다시 할 수 있다. 이 결과가 첫 번째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결과 통지 후 14일 이내에 중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 품질보증마크는 최초 교부일로부터 3년간 사용이 인정된다. 사용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매 3년마다 재심사에 합격해야 한다. 재심사 결과 불합격될 경우에는 다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품질보증마크를 부여하기 위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행해진다.
 - 민박시설 내부 및 외부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
 - 개별 휴양주택 및 객실
 - 서비스 제공
 - 여가분야
 - 환경기준 및 안전측면
- DLG는 농가민박에 들어섰을 때 손님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 유의해 평가한다. 독채는 거실, 침실, 요리실 및 화장실을 별도로 두어야 하고 개별 객실은 방안에 화장실을 함께 두어야 한다는 사항을 권장한다. 편안한 침대, 넓은 면적, 분위기 있는 체류공간은 기본이다. 환경 분야의 예를 들면 쓰레기분리수거, 탄력적인 수건교환, 개별포장의 금지 등도 실천해야 한다.
- 특히 농촌에서의 휴가가 손님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 대해 높은 가치를 둔다. 예를 들면, 친절한 분위기, 개인적 시중, 다양한 여가시설 및 농촌관광에 대한 재미가 있어야 한다. 또한 DLG는 유럽 표준 기준인 DIN EN 45011 및 DIN EN 45013의 정해진 기준에 따라 품질보증마크의 질을 관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독일농업협회에서 제공하는 카탈로그와 인터넷상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DLG “농가민박/농촌호텔에서 휴가를” 카탈로그 여행안내서
 - 승마 애호가를 위한 여행 안내서 “안장위의 휴가”
 - DLG 포도 여행 안내서 “포도원에서 휴가를”
 - DLG 전통과 매력이 있는 휴가를 위한 여행 안내서 “농촌에서의 휴가”
 - www.landtourismus.de 홈페이지를 통해 DLG 검증을 받은 민박을 비롯한 농촌숙박시설의 소개. 독일어, 영어, 네덜란드어로 소개. 주변지역에 대한 설명, 여행안내, 할인 또는 기획 여행상품 및 여행코스계획 등 소개.
 - 2003년 발행된 “농가민박/농촌호텔에서 휴가를 2003” 여행 안내서 가격은 9.9유로화로서 서점, ADAC 사무실, 출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전 독일에 걸쳐 2,000곳의 검증된 농촌숙박업소를 사진과 글로 안내하고 있다. 안내서는 주별, 관광휴양지역별로 구분해서 소개하고 있으며 DLG에 의해 등급화되고 각종 시설을 심볼로 표시해 소비자가 손쉽게 민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 장애인 배려 시설 여부, 캠핑 가능성 등. 체험관광을 선호하는 관광객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테니스, 골프, 승마, 낚시, 또는 사냥 가능성 등을 심볼로 표시하고 있다.
 - DLG 마크를 부여받은 민박의 시설 등급은 호텔과 같이 별의 개수로 표현하여 손님이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한다. 민박의 등급은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 연방협회의와 독일관광협회의 협력하에 매기고 있다.
 - 등급은 5단계로 나누어지며 3년간 유효하다. 농가민박 종사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한번의 현지 실사를 거쳐 DLG 품질보증마크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독일관광협회의 기준에 따라 숙소의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별 두 개의 숙박업소 등급을 획득하고 농가와 농촌 분야에서 정하는 기준 즉 민박종사자의 자질, 여가, 서비스, 안전 등의 분야에서 기준을 만족시키면 DLG 보증마크가 부여된다.

- DLG 보증마크를 취득한 농가민박 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다양한 마케팅 및 홍보 활동
 - 매년 개최하는 “DLG 민박 및 농촌호텔 경연대회”의 참가 기회
 - ADAC(자동차클럽)와의 협력: ADAC의 회원을 위한 혜택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
 - 광역 및 지역내 직업교육프로그램의 운영(회의, 세미나, 업체 견학)
 - 뉴스레타 또는 출판물을 통한 생생한 정보의 제공
 - 무료 홍보 및 업무수단의 이용(예: 관광·휴양객들을 위한 팜플렛, 예약확인증, 우편엽서 등)
 - 약간의 실비만으로 홍보수단의 이용(예: 편지, 엽서, 자동차 스티카, 그림책, 작은 천주머니 등)

○ 우수 민박 및 농촌호텔 경연대회

- 경연대회의 취지



· DLG 수상을 받은 민박/농촌호텔에서 숙박은 질 좋은 숙박 가능성 외에도 농업, 지역의 특색, 자연을 알게 할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광휴양객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민박/농촌호텔 운영자는 마을의 이웃 주민, 식당주인, 수공업종사자, 문화 및 여가시설 운영자와 함께 다양한 휴가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경연대회는 민박/농촌호텔 운영자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발굴,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경연대회 조건 및 방법

- 참가자격: DLG “농가에서 휴가를” 품질보증 인정을 받은 민박업체와 “농촌휴가” 인정을 받은 민박업체
- 평가항목: 농가체험, 농업에 대한 정보, 식사의 즐거움, 자연의 발견,

지역과 지역 주민 알기, 생동감, 숙박 체험 등 7가지 분야

- 초안 심사후 독립적인 전문심사위원회에서 10곳의 수상자를 최종 결정. 2002년 경우 4명의 심사위원이 엄격하게 심사: Ursula Schoercher (독일 여행센타 DZT 의장), Christa Off(독일농민연맹 산하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 연방협의회 회장), Gabi Schwall(헤센방송 기자), Juergen Kuetemeyer박사 (trio 커뮤니케이션 & 마케팅 유한회사)
- 수상자는 상장을 수여받고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며 다음 DLG “민박 및 농촌호텔에서 휴가를”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www.landtourismus.de에 소개. 수상자를 위한 홍보는 전문적인 홍보업체의 지원을 받아 수행

3.3. 주 단위 농가민박/농촌관광 관련 단체

<표 5> 주 단위의 농가민박/농촌관광 관련 단체

구 분	관련 단체 및 연락처	비 고
슐레스비히홀스타인주	Arbeitsgemeinschaft Urlaub auf dem Bauernhof in Schleswig-Holstein	
니더작센주	Arbeitsgemeinschaft Urlaub und Freizeit auf dem Lande	
멕클렌부르크-포아폼메른주	Arbeitsgemeinschaft für Urlaub und Freizeit auf dem Lande	
놀트라인 베스트팔렌주	Komm aufs Land, Arbeitsgemeinschaft für Urlaub auf dem Bauernhof Nordrhein-Westfalen	2003년 농가민박 카탈로그 ("Komm aufs Land 2003")에 138쪽 분량의 240개 농가민박 소개
라인란드팔쯔/자르란드주	Urlaub auf Bauern- und Winzerhofen in Rheinland-Pfalz/Saarland	
헤센주	Bauernhof- und Landurlaub in Hessen	
튀링겐주	Landesarbeitsgemeinschaft "Ferien auf dem Lande in Thüringen"	
작센주	Sachsischer Verein zur Förderung von kulturvollem Leben und Erholen	
바덴빌템부르크주	Urlaub auf dem Bauernhof in Baden-Wurtemberg	
브란덴부르크주	Verein zur Förderung von Urlaub und Freizeit auf dem Lande in Brandenburg	

3.4. 농촌휴가센타(Zentrale fuer den Landurlaub)

- 란트슈리프트 출판사(Landschaftsverlag)는 농업출판사의 자매회사로서 1955년 베르린에서 창업해 1972년에 본으로 사무실을 옮겨 지금에 이르고 있다. 농촌휴가센타는 란트슈리프트 출판사 소속의 농가민박의 활성화를 위한 상업적 목적의 민간기구이며 독일을 비롯한 오스트리아, 이태리, 프랑스, 덴마크, 폴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스페인 등에서의 농촌휴가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여행 안내서도 출판하고 있다.
- 농촌휴가센타의 가장 큰 기능은 농가민박 종사자와 소비자를 중개하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로서 체계적인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출판사는 "손님과 농가(Gast und Hof)"라는 독일 농촌관광 관련 유일의 전문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8명의 상근 직원을 두고 있으며 사장은 Hermann Bimberg씨이다.
- 농촌휴가센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운영, 농가민박/농촌관광여행안내서 발행, 농가민박/농촌관광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교육 등 농가민박/농촌관광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기구로 www.bauernhofurlaub.com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 농촌휴가센타의 농가민박 데이터뱅크 www.bauernhofurlaub.com

-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 분야의 상업적 목적의 데이터뱅크로서 약 4천개의 농가민박/농촌숙박업소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주로 독일의 농가민박을 소개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이태리, 프랑스, 덴마크, 폴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스페인 등 이웃 나라들도 아울러 소개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독일의 농가민박을 관광휴양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외국의 민박도 검색가능, 각종 심볼에 의해 검색이 가능하다.

- 농가민박은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 민박은 30개의 심볼로 표시되어 있어 손님들이 민박의 세부 사항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 심볼의 종류는 식사제공 여부, 포도원 여부, 노인에 적합한 시설, 어른 없이 아이들만 보내도 보살펴 주는지 여부, 유아 관련 서비스, 장애인에 적합한 시설, 애완동물 수용, 농사일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여부, 캠핑 가능성, 수영장, 사우나, 휘트니스룸, 테니스, 승마, 자전거 대여, 사냥, 어린이놀이터, 별장, 탁구, 낚시, 겨울 스포츠 가능성, 단기숙박 가능 여부, 선텐시설, 유기농업, 농촌관광센터의 책에 나오는 보너스쿠폰을 받는지 여부, 어린이 파티, 농산물 직거래, 농가카페,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시설 등

■ 손님이 추천하는 우수 민박업소 선정



- 농촌휴가센터는 매년 농가민박을 찾은 손님들이 직접 설문조사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손님이 추천하는 우선 민박업소”를 선정, 발표하고 있다.
- 2002년 우수 업소의 경우 2001년 8월부터 2002년 8월까지 2,400여 농가민박을 찾은 45,000여 명의 관광휴양객이 직접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표를 작성하였다. 설문조사항목으로는 숙소의 시설, 여가시설의 제공, 서비스, 식사 및 음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12개 주의 대표적인 농가민박업소 12개를 선정해 홈페이지, 여행안내서 등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 “농촌선택 - 유럽의 가장 아름다운 휴양주택”



- 성공적인 농촌관광 전략의 일환으로 농촌휴가센터의 주도하에 농촌관광 관련 종사자들에 의해 1994년 설립된 공동 마케팅 브랜드이다.
- 엄격한 품질 기준을 만족시키는 농가민박

- 손님을 친구처럼 보살피는 농가민박: 예를 들면, 손님 도착일에 맞추어 냉장고에 물건을 채워 넣는다든지 부모가 우유 찻꼭지를 분실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잠을 설치지 않도록 대응 우유찻꼭지를 구비하고 있다든지 하는 정도로 완전한 손님 위주의 사고를 하는 민박주인
- “농촌선택”은 근래 언론기관으로부터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ARD TV, 잡지 파밀리에 운 코, 엘터른, 디 벨트, 디 차이트, ARD 여행잡지 등에서 크게 보도한바 있다.
- 현재 96개의 농촌휴양주택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손님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다”라는 철학을 따른다.
- “농촌선택”의 마케팅 전략 및 계획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 인상적인 여행안내서의 발행: 제목은 “농촌에서 재미를-유럽의 가장 아름다운 휴양주택(Lust aufs Land - Europas schoenste Ferienhoefe)”.
 - 협력파트너, 서점, 인터넷을 통한 여행안내서의 판매
 - 비수기에 주로 독창적인 마케팅 아이디어의 집행
 - 기존의 농가민박 데이터뱅크 홈페이지(bauernhofurlaub.com)에 소개하고 농가 자신의 홈페이지 링크
 - 인터넷 분야에서 이름이 있는 업체와 함께 시스템의 구성
 - bauernhofurlaub.com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특별히 광고 게재 가능성
 - 광범위한 홍보활동
 - 신문·잡지 등 인쇄미디어, 라디오, TV 편집진과 함께 협력
 - 독일의 체험지도의 개발
 - 마케팅 및 법률 문제에 대한 개별 상담
 - 세미나를 통한 직업교육 및 경험 교환
 - 관광휴양 관련 기관·단체의 연락처 공동 이용
 - 이메일 뉴스레타의 제작
 - 지구보호
 - 손님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 아이디어의 판매: 우유찻꼭지서비스, 도착시 냉장고 서비스, 어린이생일파티, 생일쿠폰 등

4. 사례: 독일 바이에른주의 농가민박지원정책

- 남부독일의 바이에른주는 독일 농가민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2ha 이상의 농토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종사자 중 농가민박을 겸하고 있는 가구는 독일 전체에서 14,746세대(1999년 기준)이며, 이중 바이에른주가 7,131가구로서 전체의 48.4%를 차지한다. 침대수 기준으로는 독일 전체 105,843개 중 바이에른주가 53,194개로서 50.3%를 차지하고 있다.
- “바이에른주 소경영 투자촉진지침(Richtlinie fuer einzelbetriebliche Investitionsfoerderung)”에 근거하여 농가민박 경영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농가민박경영자의 재정지원 조건
 - 농업종사자만 해당되는데, 재원 수령자는 농부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 농촌관광영업의 재정지원 범위
 - 농가민박에 대한 재정지원은 침대수 기준 25개 이내인 경우에만 수령할 수 있다.
 - 농가민박 경영자당 3년내에 10만 유로화(약 1억 3천만원)까지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 농촌관광영업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 지역의 전통적 특성을 띠는 가구가 딸린 숙박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재정지원도 가능하다. 지역특색을 갖는 자연소재 및 상응하는 형태와 공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유의해야 한다.
- 다른 영업과 비교하여 농촌관광영업 허가에 있어서의 제한이나 혜택은 다음과 같다.
 - 건설관련법 상 외부지역 (Aussenbereich)에서 건축상 예외규정을 적용 받으려면 농가민박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농촌관광 촉진을 위한 민간기구

- 바이에른주에서는 7,100여 가구가 농가민박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2,200여 가구가 바이에른주 농가민박협회에 가입되어 있다. 협회는 회비로 운영하며 주로 마케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 “바이에른주 소경영촉진 지침”중 소득다양화, 농촌지역경제력강화, 대안소득원 창출 분야 요약

○ 목적

- 농가소득원의 다변화
- 농촌지역경제력의 강화
- 농산물직거래, 농가민박, 농업·농촌가사·농업과 유사한 활동 및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소득결합을 통한 추가적인 대안소득원의 창출

○ 재원수령자

- 농업경영자
 - 농업매출이 전체의 25%이상인 농업경영자
 - 최소한 6ha 이상의 농업목적의 자경농토를 경작하는 자
 - 바이에른주에 적을 둔 자

○ 지원의 전제조건

- 연간 소득이 9만 유로 미만인 자
- 직업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지원희망조치의 경제성, 재원조달 가능성, 목적 타당성을 증명
- 지원 승인 이전에 사업착수가 되지 않았을 것
- 농업경영에 있어서 양호한 농업실무를 포함한 최소한의 기준 지킬 것
 - 예를 들면, 시비시행령, 연방배출보호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도살법시행령, 돼지사육위생시행령, 가축수송시행령, 유유시행령, 육류위생법 등의 준수

○ 지원의 종류

- 영수증을 통해 증명 가능한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원 가능하다. 다만, 자체 노동력에 대한 댓가, 소비재구입, 경상운영비, 개인에 대한 지불, 공공기관에 지불하는 사용료, 수수료, 관세 등은 지원할 수 없다.
- 지원의 형태는 자본대출금의 이자지불(이자경감의 형태로)과 보조금(투자사업비중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의 두 가지가 주를 이룬다.

■ 농업투자지원프로그램(Agrarinvestitionsfoerderprogramm: AFP)

○ 지원 전제 조건

- 농업 관련 직업 분야의 수료 시험 합격 및 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신청 투자목적에 적합한 직업적 소양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 두 개의 최근 결산회계 장부
- 최소한 10년간의 조세부담회계장부
- 최근 수년간의 순 자기자본형성
- 투자구상을 통해 경영자의 경제적 타당성의 검증

○ 보조금, 이자경감 및 경우에 따라 준공보조(5만125만 유로의 투자규모)

- 보조금: 최대 3만 유로 범위내에서 투자규모의 10%까지 지원가능
- 이자경감: 건설대부 경우 대출금액(이 중에서 보조금 규모만큼은 제외)의 30%, 기계 및 기술대부 경우 대출금액의 12%까지 이자 경감 가능. 경감 대상의 대출금 규모는 경영에 필요한 전일(全日) 노동자의 수에 따라 등급이 있으며, 2명의 전일 노동자의 경우 20만 유로까지 가능. 1인 증가시마다 85,000유로씩 증가
- 준공보조: 2만 천 유로 범위내
- 한 경영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의 총 규모는 10만 유로 미만
- 투자 상담·지도비용의 지원도 가능하다. 특히 10만 유로 이상의 투자부터는 투자상담·지도사가 필요하다. 투자상담·지도비용의 60%까지

는 지원이 가능하다. 나머지 투자상담·지도비용에 대해서는 이자 경감 조치가 적용된다.

※ 투자 규모 30만 유로 소요되는 농가민박시설 설치시 AFP 프로그램에 의해 보조금 3만 유로와 대출금 27만 유로 (30만~3만)의 30%에 해당하는 81,000유로만큼의 이자경감을 합하면 지원금의 합은 111,000 유로이다. 그러나 한 경영자에 대한 지원금의 총 규모는 10만 유로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 경영자는 10만 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표> 독일의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 관련 설문조사

2003년 1월 시장조사회사인 Produkt + Markt는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 연방협회의 의뢰에 의해 독일의 농촌관광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500여명의 농촌관광종사자가 답변한 설문조사결과를 2003.1.22. Anton Bloeth 연방협회의 사무국장이 베르린의 국제녹색주간 (Internationale Gruene Woche) 농업박람회장에서 발표

1. 근래 농촌관광분야의 영업에 대한 만족도

구 분	백분율
(1) 매우 만족	32%
(2) 만족	36%
(3) 만족하는 것은 아니거나 불만족	32%

<3번에 대한 이유>

- 불량하거나 미비한 공실 94%
- 나쁜 날씨 8%
- 손님요구사항 증대 8%
- 지출을 꺼리는 추세 6%

2. 전년과 비교한 매출/소득 비교

매출	백분율	소득	백분율
(1) 평균 16% 증가	30%	(1) 평균 14% 증가	19%
(2) 전년과 동일 수준	35%	(2) 전년과 동일 수준	34%
(3) 평균 19% 감소	31%	(3) 평균 18% 감소	40%

3. 손님들의 요구

- 호텔보다 저렴한 숙박 : 75%
- 자전거 및 산책 기회 : 63%
- 중급 호텔과 같은 수준의 설비 : 58%
- 인근에 수영장 시설 : 60%
- 어린이를 위한 모험놀이시설 또는 놀이터 : 58%
- 손님끼리 모일 수 있는 기회 (그릴, 벽난로 저녁식사 등) : 53%
- 농장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 : 32%
- 고급 호텔과 견줄 수 있는 호텔시설 : 21%
- 인근에 테니스할 수 있는 기회 : 6%

4. 시설투자계획

- 없음 : 43%
- 다음 시즌을 위해 투자할 계획 : 38%
- 다음 시즌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투자할 생각도 있음 : 20%

시설투자는 우선적으로 침실의 설비 투자, 여가시설, 민박의 확장, 직업교육, 서비스, 정원/주택부근, 어린이놀이시설, 승마, 물놀이 등의 분야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음.

5. 투자규모

- 투자계획 없음 : 43%
- 투자계획 있음 : 57%

	다음 시즌에 투자	3년 이내에 투자
1,000 유로 미만	17%	15%
1,000-5,000 유로	27%	17%
5001-10,000 유로	14%	12%
10,001-50,000 유로	22%	20%
50,001-100,000 유로	4%	8%
100,000 유로 초과	2%	4%
무응답/ 잘 모르겠음	14%	14%
평균	18,425유로	33,309유로

6. 홍보비용지출예산 (2002 : 추정, 2003 계획)

	2002	2003
250 유로 미만	10%	13%
251-500 유로	21%	23%
501-750 유로	8%	9%
751-1,000 유로	15%	14%
1,001-2,000 유로	21%	19%
2,001-5,000 유로	14%	11%
5,000 유로 초과	4%	4%
무응답/ 잘 모르겠음	7%	7%
평균	1,630유로	1,446유로

7. 농가민박의 가격 (14일 숙박 기준)

	독채	방 한개
150유로 미만	7%	27%
151-300 유로	3%	19%
301-450 유로	18%	9%
451-600 유로	34%	2%
601-750 유로	19%	1%
750 유로 이상	10%	-
무응답/ 잘 모르겠음	3%	2%
평균	543유로	105유로

8. 2003년의 가격인상 가능성

- 가능성 없음 : 11%
- 가능성 있음 : 88%
 - 2% 인상 가능성 : 24%
 - 3-5% 인상 가능성 : 35%
 - 6-10% 인상 가능성 : 26%
 - 11-20% 인상 가능성 : 4%
 - 20% 이상 인상 가능성 : %
 - 평균 : 6% 인상 가능성

9. 영업상 어려움

- 인건비 : 49%
- 전체 업종의 한계 : 29%
- 재정적 어려움 : 17%
- 경제적 상황 : 17%
- 법적 장애 : 16%
- 농가민박/농촌관광에 대한 손님의 관심 : 15%
- 관료적 부담 : 12%
- 정치적 상황 : 12%
- 재교육/직업교육 : 4%
- 지역에 대한 손님의 관심 : 2%
- 기타 : 3%
- 무응답 또는 잘 모르겠음 : 1%

대만의 농촌관광 정책 : 휴한농업제도를 중심으로

1. 휴한농업발전계획 추진 배경

- 대만의 농업은 국가 경제 타 부문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되고, 1990년 이후 대외 개방 압력이 가중되면서 기존 생산 위주의 전통적 농업은 더 이상 유지가 어렵게 되었다.
-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관광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농업경영형태 개선을 포함하는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 이러한 경제사회구조의 변화 상황에서 농업생산기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농업과 휴식활동을 서로 결합하여 농업생산, 생활, 생태보호 등의 서비스 기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가 농업발전의 중요과제로 대두하였다.
- 대만 정부는 농업정책 기조를 “무역자유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지속 가능한 농업의 유지”로 전환하고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수립하였는바, 휴한농업 발전계획도 그 일환으로 추진된다.

2. 휴한농업발전정책의 추진 과정

■ 휴한농업의 정의와 유형

- 대만의 휴한농업이란 전원경관·자연생태 및 환경자원을 이용하고, 농림축수산 생산·농업경영활동·농촌문화 및 농가생활을 결합하여 국민

에게 휴한을 제공하고 농업과 농촌에 대한 체험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농업경영이다.

- 광의의 휴한농업은 관광농원, 시민농원, 휴한농장 및 농업관광 등 네 가지 부류를 포함한다.
 - ① 관광농원: 농민이 자체적으로 경영하는 농원을, 농산물(과일, 화훼, 버섯, 차 등 작물 포함)이 성숙하여 수확 가능한 기간에 국민에게 개방하여 수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농작물의 생태를 실제로 이해하고, 농업경작과 수확을 학습하게 하며, 농업 생산을 체험토록 하는 오락과 교육의 이중효과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 1983년부터 관광농원 발전 시범계획을 추진한 이래, 광범위한 농민과 관광객의 환영을 받아왔으며, 현재 관광농원 면적은 2,000ha에 이르고, 59개 향·진(우리의 읍·면에 해당)에 분포되어 있으며, 작물 종류는 감귤·백향과·문단·연무·양도·딸기·배·대추·포도·자두·리치 등 20가지의 과일, 버섯·차·호접란 등이다.
 - ② 도시농원: 도시농원은 도시 근교의 농지소유주가 농지를 제공하며, 30~100평 규모를 1단위로 나누고, 농지가 없는 도시민에게 임대해 주어 채소·과수 또는 화훼의 재배, 농업생산의 기쁨과 고생을 체험토록 함으로써, 가정구성원의 정감 교류를 증진시키고 동시에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농원은 농촌전원의 자연경관을 유지 보호함은 물론 휴경지의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할 수 있으며, 휴한·교육·오락 및 건강을 종합적으로 체험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정부는 도시농원에 대하여 계획을 돕고 경영관리기술을 제공하며, 동시에 보도, 공중화장실, 휴게실,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을 지원한다.
 - ③ 휴한농장: 관광농원의 추진 성과가 양호하게 되자 농업과 관광휴한 활동을 결합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농림축수산 생산, 농가생활, 농어촌문화, 전원경관, 자연생태 등 자원을 광범위하게 휴한농업의 범주에 편입하였다. 휴한농장의 경영 내용은 관광농원,

농촌생활, 체험농업을 포함하며 숙박과 음식 관련 서비스 항목 또한 이로 인해 생겨나게 되어 종합적인 경영의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 ④ 농업관광: 농업관광은 관광농원, 시민농원, 휴한농장 또는 기타 특수한 경영형태를 지닌 농장을 결합하여, 국민이 농촌 또는 농장에 가서 관광을 즐기고 농업과 대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건강 휴한 방식이다. 농업자원을 관광에 이용하거나 또는 관광공간을 농업 범주까지 확대하여 표준규모에 미치지 못하나 특색을 구비한 농장은 그 자원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휴한농업 발전 대열에 참여하여 농가소득을 제고시킨다.

■ 휴한농업 발전정책 추진 경위와 내용

- 대만 정부는 “현대의 농업은 단지 생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일종의 생활방식이다”라는 관념에 입각하여 생산, 휴경 및 보호 기능을 고루 고려한 농민 주체의 휴한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촌을 건설하며, 농민을 돌보는 정부의 기본정책 목표와 부합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 휴한농업은 농업의 “생산, 생활 및 생태”의 삼위일체 기능을 달성하는 것으로 농업경영활동, 농촌설비, 농촌공간, 농업자연환경, 농촌인문자원 등의 이용 및 전체적인 계획설계를 통하여 이상적인 휴한농원을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 휴한농업의 주 목적은 농촌의 관광농업 효과를 발휘하여, 국민이 농업과 농촌을 체험하는 기회를 증가시키고, 국민으로부터 농업 및 농민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농민의 수익을 높이고 농촌의 번영을 촉진하는 것이다.
- 휴한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생활이나 혹은 보호의 관점에서부터 농촌 전체의 사회, 문화 및 환경에 의거하여 관광객의 휴식, 문화 및 교육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몇 가지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보호, 전원 및 촌락의 미화, 농민의 공동경영을 통하여 개별경영의 효율개선, 생태환경보호와 도덕행위의 교육을 통합, 유관법령의 수정과 보충
- 1992년 12월 10일 행정원은 휴한농업지역의 설치 및 관리방침을 결정하였으며, 1993년 하반기에 비로소 근거가 될 법규를 갖추었는데, 그 전에는 휴한농업발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법령 근거가 없어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 1989년 4월 28일 행정원 농업위원회와 대만대학이 공동 주최한 “휴한농업발전에 관한 학술대회”는 대만에서는 “휴한농업”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휴한농업에 대한 농민 및 사회 각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 학술대회 개최 결과 휴한농업발전에 관한 6개항의 중요한 결론이 도출되었고, 이것은 이후 대만정부가 휴한농업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
- 1990년부터 시작하여 행정원 농업위원회 위위시엔(余玉賢)주임은 휴한농장의 설립교육작업을 중시하고, 부속기관의 검토와 이행 및 지도와 계획사업을 요구하였다.
 - 새로운 계획 및 내용에 대하여 정부 및 유관기관은 경험, 인재, 사례 등에 있어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었으므로 연도별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지시
- 휴한농업 발전 구상이 구체적인 실시방안이 되게 하기 위하여 농업위원회 지도처는 1990년에 농업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 방안 중, “농어산촌에 휴한농업 및 관광농원을 발전시키는 계획”을 심의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 계획은 매년 평균 9개 부락을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현지 조사를 거쳐 다음해에 이러한 계획에 의거하여 적절한 건설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절차에 따르면 5년에 50개의 농어산촌 부락을 완성할 것으로 예상

3. 휴한농업 관련 법령

- 휴한농업설치관리법, 휴한농업지도관리법, 휴한농업지구지정심사작업요점, 휴한농장경영계획심사작업요점 등

■ 휴한농업 법령의 정비 과정

- 휴한농업 관련 법령은 최초로 1992년 12월에 『휴한농업지구 설치 관리규칙(休閒農業區設置管理辦法)』을 공포하여 실시한 것으로부터 법제화가 시작되었다.
 - 1992년 12월: 휴한농업지구 설치 관리규칙을 공포 및 실시. 개별 경영자 스스로 휴한농업지구의 설치를 계획하고 신청하도록 규정. 개별 경영자가 휴한농업지구로 신청하므로 그 면적이 50ha에 달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동경영이나 위탁경영 방식으로 경영. 농장면적에 대한 과대한 요구조건으로 경영 주체가 불명확하여 전체 발전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
 - 1996년 12월: 휴한농업지구와 휴한농장의 개념을 구분하고 법규 명칭을 휴한농업지도규칙(休閒農業輔導辦法)으로 수정하고 지방정부가 휴한농업지구 계획을 주도하여 지구내의 휴한농장 설치 조건과 경영관리를 지도하고, 상급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설치관리요점을 제정하여 지도하도록 함. 그러나 요점은 법률체계상의 지위가 낮아 농업용지, 임업용지 또는 양식용지에 식당이나 숙박시설 등 휴한농업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토지관리, 환경보호, 수도보전 및 상업등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어 제대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음.
 - 1999년 4월: 1998년 행정원 경제건설위원회는 행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휴한농장 설치시 대두되는 비도시토지사용, 경사지개발, 건축관리, 환경영향평가, 세무법령 등 문제의 관계부처 대표를 소집하여 논의 결과 휴한농업지도규칙(休閒農業輔導辦法)을 수정 실시하기로 결정. 주요 수정 내용은 휴한농장의 설치 기준, 시설 종류, 설립 절차 및 설립 후

의 관리 감독 등 사항에 대한 규범을 구체화. 그 가운데 부분적으로 토지관리상의 한계를 돌파하였다는 점이 중요. 휴한농장이 설치 기준에 달하는 자(경사지 10ha, 비경사지 5ha에 달하는 자)는 그 농장이 숙식 등 휴한시설을 설치하는 토지가 수도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법규의 관련규정에 부합할 경우 토지변경편성을 통해 합법적인 용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2000년 7월: 2000년 1월에 『농업발전조례』를 수정 공포함에 따라 당년 7월 후속조치로 『휴한농업지도규칙(休閒農業輔導辦法)』을 수정하여 그 명칭을 『휴한농업지도관리규칙(休閒農業輔導管理辦法)』으로 개정
 - 첫째, 숙박시설, 식당시설, 농산물과 농촌문물전시(판매) 및 교육해설 센터 등 휴한시설이 없는 휴한농장 설립 면적 기준을 0.5ha로 완화
 - 둘째, 도시토지지역에 있는 휴한농장의 휴한농업시설 항목을 수정
 - 셋째, 휴한농장 허가증 발급 절차, 수수료 기준 및 처벌규정을 추가 제정

■ 최근 『휴한농업지도관리규칙』 수정 내용

- 경제발전자문위원회의를 통해 “WTO 가입에 대응하여 농업의 변화와 산업승급을 추진”하자는 데 공통된 견해를 피력하였다. 주요 조치로는 휴한농어업 지도 및 발전 관련법령규범(관광발전조례, 민박관리규칙, 비도시토지개발심의규범, 개발행위시 환경영향평가 세목 및 범위인정 기준 등)을 수정 또는 제정하여 휴한농어업 발전과 환경보전에 도움을 줌으로써 지속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 『관광발전조례 수정안』과 『민박관리규칙(民宿管理辦法)』의 공포 실시에 맞춰 『휴한농업지도관리규칙』을 다시 수정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 교통부는 2001년 12월 12일 『민박관리규칙(民宿管理辦法)』을 공포 실시하였다. 농업주관기관으로부터 경영허가등록증을 발급 받은 휴한농장 또는 농업주관기관이 계획 지정한 휴한농업지구 내의 농사(農舍)가 민

박을 설치하여 객실수 15개 이하, 그리고 객실건물 건평 200m²이하 규모로 경영하고자 할 경우 휴한농장 또는 휴한농업지구 내의 농사(農舍)는 민박관리규칙에 의거 민박경영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휴한농업 숙박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농민이 토지변경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휴한농장 숙박경영을 하던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농민이 새로운 농외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였으며, WTO 가입으로 인한 농민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2002년 1월 11일 『휴한농업지도관리규칙』을 수정 공포하였다.

- 휴한농업지구의 면적 상한 수정
 - 휴한농장 중 농업경영체험지구를 생태교육용 삼는 내용 추가
 - 숙박, 식당 등 휴한농업시설을 설치하는 비경사지 휴한농장의 토지변경 신청 면적의 하한을 3ha로 완화
 - 도시토지지역과 비도시토지지역에 있는 휴한농업시설항목 추가
 - 농업주관기관으로부터 경영허가등록증을 발급 받은 휴한농장 또는 농업주관기관이 계획 지정한 휴한농업지구 내의 합법적으로 건축한 농사(農舍)를 민박관리규칙에 의거한 민박경영을 신청하는 내용 추가
- 민박관리규칙의 실시에 따라 토지변경편성 절차 없이 기존의 농가를 이용할 수 있고, 농장면적도 0.5ha 이상이면 간이형 휴한농장 경영을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많은 농민의 환영을 받아 장차 휴한농업의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4. 휴한농장의 설립과 경영

■ 휴한농업지구의 계획 및 지도

- 휴한농업지구의 구비 조건
 - 풍부한 농업생산 및 농촌문화자원, 풍부한 전원 및 자연경관, 편리한 교통, 토지자원

- 토지가 모두 비도시지역에 속하여 있으면 면적은 50ha 이상~300ha 이하, 모두 도시지역에 속하여 있으면 토지면적은 10ha 이상, 일부는 도시에 속하여 있으며 일부는 비도시에 속하여 있으면 토지면적은 25ha 이상~200ha 이하

○ 휴한농업지구 설립 계획 수립

- 해당 지방자치단체(직할시 또는 현(시))의 주관기관이 기초 계획을 입안하여 중앙주관기관에 보고하고, 중앙주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확정한다. 이 계획은 경영자가 기초적인 계획서를 작성 구비하고 현지주관기관의 지도를 받아 신청하며, 계획서의 양식은 중앙주관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 휴한농장의 설치 신청

- 용도 구분: 휴한농장은 농업경영체험지구와 여행(관광)객휴식지구로 구분한다. 농업경영체험지역의 토지는 농업경영과 체험, 자연경관, 생태보전, 생태교육용으로 사용하며, 여행(관광)객휴식지역의 토지는 숙박, 식사, 자가생산농산물 가공(양조)장, 농산물과 농촌문물전시(판매) 및 교육해설센터 등 휴한농업 관련 시설용으로 사용한다.

- 농업경영체험지역의 토지를 생태교육용으로 사용할 경우, 그 시설은 대나무, 벚짚, 플라스틱, 철사 등 기초를 고정하지 않은 임시적이고 농업생산과 관련있는 건축물에 한한다.

- 농장 규모: 휴한농장을 설치한 토지는 반드시 인접해 있어야 하며, 토지면적은 0.5ha 이상이어야 한다.

- 휴한농장의 토지면적이 3ha 미만의 비구릉지이거나 혹은 10ha 미만의 구릉지인 경우 농업경영체험지구로 그 용도를 제한한다.

- 휴한농장의 토지면적이 3ha 이상의 비구릉지이거나 혹은 10ha 이상의 구릉지인 경우 농업경영체험지구로뿐만 아니라 관광객휴식지구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관광객휴식지역이 전체 휴한농장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10%로 제한한다.

- 토지 분포가 구릉지를 포함하고 있으면 구릉지의 규정에 의하고, 도시 및 비도시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면 비도시토지 규정에 따른다. 토지 범위가 국가공원 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국가공원 범위의 토지는 농업경영체험지구로만 사용하고, 아울러 국가공원계획에 의거 이를 관리한다.
- 농장 개발과 이용시 근거 법령: 도시계획법, 지역계획법, 수도보전법, 구릉지보호이용조례, 건축법, 환경영향평가법, 관광발전조례 및 기타 유관법령
- 농장 개설: 관할 직할시나 혹은 현(시) 주관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점유 면적이 상대적으로 큰 직할시 또는 현(시)의 주관기관에 설립을 신청해야 한다.
- 직할시나 혹은 현(시)주관기관은 휴한농장 개설신청서를 접수하면, 농업 부문의 관계기관과 회동하여 신청된 문건이 규정에 부합한지를 심사하고, 또한 토지사용변경과 관계되지 않는 것은 직할시 또는 현(시) 주관기관이 휴한농장개설동의문건을 발급하며, 그 외는 중앙주관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한 후 휴한농장개설동의문건을 발급한다.
- 휴한농장 개설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서, 경영계획서, 농장의 토지사용 등기, 토지권리증명서류(최근 3개월 내에 발급한 토지등기부등본, 신청 범위를 착색표명한 지적도등본, 도시지역의 토지는 토지사용지역의 증명, 임대토지는 토지소유권자가 작성한 토지사용동의서 혹은 휴한농장 개설신청 동의와 더불어 토지사용 증명문건 첨부, 공동 개설시 공동경영인 명단).
- 영업 항목과 허가: 휴한농장의 숙박, 식당, 자가 생산 농산물 가공(양조)장, 농산물과 농촌문물전시관 및 교육해설센터 등 관련시설 및 영업

항목은 법령에 의거 허가·등기를 해야 한다.

- 휴한농장의 허가 개설준비기간은 4년으로 하고, 기간 안에 휴한농장의 허가등기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휴한농장개설동의문건을 폐지시킨다. 그러나 타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기간을 연장하며, 연장 회수는 1회에 한하고 그 기한은 2년이다.
- 토지변경 편성: 휴한농장 신청범위내의 토지가 공유토지이면 관리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동의를 얻은 후 토지변경 편성을 신청한다.
 - 휴한농장 설치를 위해 토지변경을 하는 경우 반드시 회수금(回饋金)을 납부해야 하며, 회수금(回饋金)의 납부와 이용은 농업용지변경회수금(回饋金)의 납부 및 분배이용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휴한농장의 시설

- 도시토지에 위치한 휴한농장에 설치 가능한 휴한농업시설: 숙박시설, 식당시설, 농산물과 농촌문물전시(판매) 및 교육해설센터, 입장권판매시설, 경비시설, 안전보호시설, 평면주차장, 오두막(정자)시설, 조망시설, 생태교육 및 해설표지판, 공중화장실, 등산 및 산책로, 수도보전시설, 환경보호시설, 농로, 기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한 토지사용관리규정에 부합하는 시설
 - 이중 숙박시설, 식당시설, 농산물과 농촌문물전시(판매) 및 교육해설센터는 반드시 여행객휴식지역에 설치해야 하며, 그 총면적은 휴한농장 총면적의 5%, 최대 2ha를 초과할 수 없다.
 - 농로를 제외한 이 밖의 휴한농장시설은 그 총면적이 휴한농장 총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또한 도시토지사용지역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휴한농장이 도시토지에 위치해 있으면, 그 위치를 농업지구나 보호구역 내로 한정한다.

- 비도시토지에 위치한 휴한농장에 설치 가능한 휴한농업시설: 숙박시설, 식당시설, 자가 생산 농산물 가공(양조)장, 농산물과 농촌문물전시(판매)관 및 교육해설센터, 입장권판매시설, 경비시설, 안전보호시설, 평면주차장, 오두막(정자)시설, 조망시설, 생태교육 및 표지해설시설, 야영시설, 공중화장실, 등산 및 산책로, 수도보전시설, 환경보호시설, 농로, 기타 현(시)정부가 자체적으로 정하고 비도시토지사용관리규정에 부합하는 시설
 - 이 중 숙박시설, 식당시설, 자가 생산 농산물 가공(양조)장, 농산물과 농촌문물전시(판매)관 및 교육해설센터는 여행객휴식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현행토지사용법에 따라 사용이 허용되는 것 이외에 상관규정에 따라 비도시토지 변경 수속을 하여야 한다. 토지변경의 총면적은 휴한농장 총면적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2ha로 한정하고 있다.
 - 이 외의 휴한농장시설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비도시지역의 토지사용허가수속을 하여야 하며, 농로이외의 총면적은 휴한농장 총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건축물 규정: 휴한농장내의 모든 휴한농업시설은 휴한농업 경영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자연문화경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 그 건축물의 높이는 관계 법령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10.5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고 3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 자가 생산 농산물가공(양조)장 건물의 부지면적은 500㎡로 제한하며, 숙박시설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건축가능용지 총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휴한농장의 관리 및 감독

- 허가등록증 발급 신청: 휴한농장의 신청인은 각 항 휴한농업시설의 사용허가를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실사를 요청하고 실사에 합격한 이후 중앙주관기관에 휴한농업 허가등록증을 발부해 주

도록 요청한다. 토지사용변경이 필요한 자는 비도시지역의 토지변경승인문건을 별도로 구비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 휴한농장의 허가등록증 발급 신청은 농업주관기관이 허가신청안건 접수 및 증명문건 발급수수료수납기준에 의거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휴한농장을 경영하면 직할시나 혹은 현(시)주관기관은 농업발전조례 제7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 내용 변경: 휴한농장의 명칭·책임자·경영항목의 변경, 영업정지 및 재개업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할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중앙주관기관에 휴한농업 허가증에 등기된 내용을 변경토록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 휴한농장을 폐업할 경우 영업을 중단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을 경유하여 중앙주관기관에 휴한농장 허가등록증을 폐지하도록 요청한다.
 - 휴한농장의 면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새로 신청해야 한다.
- 등기와 납세: 휴한농장은 회사법, 상업등기법, 영리사업 통일증명발급규칙, 영리사업 등기규칙, 영업세법, 소득세법, 건물세조례 및 토지세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영업등기 및 세금납부를 해야 한다.
- 주관기관의 감독: 휴한농장 각 항의 설비 및 경영항목에 대하여 각 목적사업의 주관기관과 함께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개선을 명령하고, 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 유관법령에 의거 중앙주관기관에 관련 항목에 대한 허가를 철회하도록 요청한다.
- 주관기관은 설립 및 등기를 허가한 휴한농장에 대하여 대출, 경영관리 등을 지도하고 협조하도록 되어 있다.

5. 휴한농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주요 지원

■ 중앙정부의 휴한농업지구(휴한농장) 지정 및 보조

- 관련 법령에 의거 매년 일정수의 휴한농업지구 또는 휴한농장을 선정하여 중점 지도한다.
- 선정된 휴한농업지구에 대해서는 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 건설을 지원하며, 개별 휴한농장에 대해서는 우대금리융자를 제공한다.
- 지정된 휴한농장주에 대해서는 휴한농장의 경영능력 배양을 위해 일정기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때로는 해외연수를 실시하며, 부녀자에게는 식당 및 숙박시설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비용은 전액 정부에서 부담한다.

■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 농업위원회 홈페이지, 대중매체, 각종 판촉활동 등을 통해 홍보를 추진한다.
- 전국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골길을 걸으며 전원에서 느끼는 즐거움”에 관한 휴한농업 글짓기 및 그림대회 등을 개최하여 휴한농업을 보급하고자 한다.
- 농업전문 TV채널 “우리들이 걸었던 길”이란 프로그램과 협조하여 관광농업 및 관광농원을 소개하고 있다.
- 대만지역의 휴한농업 및 휴한농장시설의 정보를 수집하여 지도 및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 책임 분담, 협조관계 강화, 사업범위 구분 등을 통한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원 농업위원회는 특별히 “휴한농업 및 관광농원계획을 계획하는 권한과 책임의 구분 및 업무분담요점”을 연구하여 제정한다.

■ 휴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여건 조성

- 2001년부터 주5일근무제를 전면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여가활용 기회 증대를 통한 휴한농업 활성화를 촉진시킨다.

■ 녹색박람회 개최

- 주최: 宜蘭縣政府(대만 동북부지역에 위치)
- 개요
 - 목적: 국민에게 농업을 이해시키고 농산물을 판매하며 휴한농업을 전파하여 농가소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 소요자금: 중앙정부(농업위원회)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며 宜蘭縣政府, 기금회, 농민단체 등이 공동 출자
 - 행사 참여 주체: 지역 농민
 - 주요 수입원: 입장료
 - 수익분배: 손실 발생시 기금회와 농민단체 출자금 우선 상환한 후 차액은 지방정부가 부담. 단, 수익발생시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 휴한농업 발전지도조치

1) 미래환경 예측

가) 농업경영형태 개선의 수요

- 대만이 WTO에 가입하고 나면 농업은 농산물 수입의 충격에 직면하게 되어, 이는 농민의 수입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따라서 전통적인 생산형 농업에서 서비스형 농업으로 전환시켜 농업의 풍부한 생산, 생태 및 생활 자원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농업관광을 제공하고 나아가 농업의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민을 지도한다.

나) 국민관광수요의 제고

- 대만은 국민소득이 이미 13,000달러 수준을 넘어섰고, 아울러 정부가 주5일근무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국민의 관광기회와 의욕이 크게 증가하여 물질생활의 여유를 추구하게 되었고, 또한 정신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더욱 풍부한 시간과 경제능력을 구비하게 되었다.
- 따라서 휴식활동은 이미 대만 국민 생활 중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으며, 그 중 옥외 오락활동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 2,300여억 위엔의 휴한생산가치 및 매년 7,000여만 관광인원의 상업 기회 중 장차 상당 비중을 차지

2) 계획목표

- 각종 자원을 결합하여 농촌을 건설함으로써 휴한농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한다.
- 지속경영과 농업경영 이념에 부합하는 휴한농장을 설립한다.
- 농촌주민이 휴한농업 경영의 서비스 능력을 갖추도록 배양하여, 그 서비스 수준 및 경영관리 능력을 제고한다.
- 대만 국민의 농업에 대한 체험활동의 흥미와 취미를 배양한다.

3) 계획업무항목

- 휴한농업지구 적극 계획
 - 과거 대만정부는 부유한 농어촌 계획과 건설에 막대한 경비를 투입하면서 휴한농업 발전 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발굴하여 휴한농업지구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한 바 있다.
 - 기존의 농촌건설 기초 위에 휴한농업을 발전시키려는 현지 농민의 공감대 형성 및 강한 참여의식을 바탕으로 휴한농업지구 설치를 촉진한다.

- 합법적으로 경영하는 휴한농장의 설치를 지도한다.
- 농민조직이 휴한농업을 경영하는 것을 지도한다.
 - 농장경영규모를 확대하고 농업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휴한농장은 대다수 농민에 의하여 결합되었으며, 인접한 농지를 이용하였고, 집단경영방식을 채택하여, 종합적이고 다원화된 휴한농업의 기능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농업경영의 새로운 방향이다.
 - 농가 대부분이 소농이고 이러한 소농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휴한농업을 경영하게 함으로써 의견일치가 아주 어렵게 되었다.
 - 농민들은 집단경영에 대한 각종 분업의 경험이 없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누구의 토지에 어떠한 기능을 분담시킬 것인가는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 따라서 각 지도기관은 농민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농민의 조직적인 경영을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 휴한농업 경영관리 능력을 제고시키고, 휴한농업 관련 교육훈련, 정보 제공, 네트워크 구축, 인재 양성을 실시한다.

6. 휴한농업 관련기관과 조직 및 업무

■ 휴한농업 및 관광농원 계획을 추진하는 각 기관의 권한과 책임의 구분

- 행정원 농업위원회
 - 발전정책의 입안과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지도사항
 - 실시지역의 사정과 계획보고서의 심의
 - 정책자문조직의 소집 및 관계 있는 법령, 방안, 조치의 입안사항
- 현(縣) 또는 시(市)정부
 - 계획의 추진 및 하청작업 주관 및 감독

- 실시지역의 최초답사, 기본자료의 수집조사 및 계획설계의 위탁 등
 - 계획의 추진 및 협조, 경영조직의 지도 및 감독 등의 사항
 - 본 계획의 교육, 선전 및 인재배양 등의 협조사항
- 각 향(鄕)과 진(鎭)지역의 행정기관
- 계획 추진에 협조하고, 경영조직 및 추진기구의 설립 지도
 - 실시지역을 답사하여 문서로 보고하고 기본자료를 수집하여 제공
 - 위탁하여 처리한 하청공정을 접수하여 감독
- 각 급의 농어민단체 혹은 농민, 농장조직
- 정부의 계획을 위탁 추진하고 경영조직, 선전교육 및 인재배양 등의 협조사항을 지도
 - 실시지역을 조사하여 선정하고, 기본자료를 제공하고, 농촌의 민속문화활동을 개발하는 등 업무 수행에 참여
 - 실시지역에서 농민조직을 관리하고, 농민간부를 배양하며, 전문적인 대출을 지도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
 - 휴한농업과 관계 있는 관광서비스와 필요한 자료제공 등 업무
- 행정원 퇴보회(退輔會)부문
- 농장은 퇴보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처리하며, 농장을 퇴보회에 제공할 경우 반드시 사본을 현지 시정부에 보낸다.
- 이상에서 상술한 모든 휴한농업과 관광농원의 행정체계 및 계통은 각 기관의 중점사업 및 범위를 상세하게 구분하였는데, 이는 각 기관 및 주관하는 사람의 권한과 책임을 분리하는데 유리하며, 또한 현대화된 정부가 행정효율을 높이고 농민을 편리하게 하는 일종의 실례이다.

■ 자문조직을 설치하여 휴한농업 추진을 지원

- 행정원 농업위원회는 휴한농업 및 관광농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휴한농업정책자문기관을 설치

- 휴한농업정책자문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휴한농업 및 관광농원을 실시하는 지역을 조사하고 답사하는 자문적인 역할
 - 휴한농업 및 관광농원을 저변으로 확대하는 사업인원의 훈련계획을 자문하고 지원하는 사항
 - 휴한농업 및 관광농원의 계획보고서 평가사항
 - 휴한농업 및 관광농원의 계획설계사항 및 설계원칙의 자문평가사항
 - 휴한농업 및 관광농원을 발전시키는 시설설치 및 정부보조기준의 자문사항
 - 휴한농업 및 관광농원을 발전시키는 조치, 방안, 법령 등 연구사항
 - 기타 휴한농업 및 관광농원의 교육, 지도, 협조 등을 추진하는 것과 관계 있는 자문사항
- 본 조직은 농업위원회 지도처 처장을 소집인으로, 부처장을 부소집인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임명한다.
 - 향촌사회, 사회심리, 민족문화, 원예경관, 환경공학, 농촌건축, 관광발전, 토지이용 등 휴한농업과 관계 있는 전문기술을 구비한 전문학자
 - 내무부, 교통부, 퇴보회(退輔會), 농업위원회, 대북시정부 등 유관기관의 대표
 - 대만성농회, 대북시농회, 대만성어회(漁會), 대만성관광협회 등 유관단체 대표
 - 휴한농업의 전문적인 안건을 계획하여 실시하는 지역의 현시정부 대표
- 본 조직의 위원회의 소집시 실시 지역의 농민대표 및 토지 소유권자를 초청하여 출석시키고 의견을 제공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 전국 규모의 민간조직

- 현재 몇몇 현·시 급의 휴한농업협회가 조직되어 있으나 아직은 뚜렷

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 규모의 민간조직은 없는 실정이다.

7. 휴한농업에 대한 정부 보조

■ 보조 대상

- 농어위원회는 휴한농업 발전계획의 신청절차에 의거 휴한농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조직은 다음과 같다.
 - 실제 농어업의 경영에 종사하는 농어민
 - 농회(농협), 어회(수협), 농어업합작사, 합작농장

■ 보조 용도

- 휴한농업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용도규정은 아래와 같다.
 - 농업경영시설: 원예, 축사, 온실시설, 환경녹화, 미화, 경지정리, 시범농장 및 기타 농업경영시설
 - 공공성 설비: 배수설비, 쓰레기 및 오염처리설비, 오두막(정자), 관광전망대, 안내표지판, 다리, 보도, 주차장 등 기타 관련시설
 - 서비스성 시설: 휴게실, 농수산물판매소, 관리시설, 농촌 수공예실, 농촌문물전시관, 체육활동시설, 야영시설 및 기타 상관시설

■ 신청 및 평가과정

- 휴한농업 경영주체는 구비된 신청양식에 기초하여, 각 향의 문건, 세부 실시계획서 및 계획보고서를 구비하고, 향(鄉)·진(鎭)지역 농회를 경유하여 소재지역 현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직할시의 경우 직접 시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 휴한농업의 경영주체는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관할구역 농업개량소와 현농회에도 제출한다.
- 현정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 신청서에 적혀있는 것이 완벽하고 첨부문건이 자세한지 세부실시계획서 및 계획보고서가 완전한지, 각항의 시설물의 토지사용이 규정에 부합하고, 토지의 소유권이 분명한지 등에 대하여 심사하고,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문건을 반려한다.
 - 규정에 부합한 것은 현정부, 지역농업개량소 및 현(縣)농회가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더불어 최초심사의견서를 작성한 후 농업위원회에 보내 재심사를 거쳐 승인

■ 평가 기준

- 평가 기준은 자원 및 발전잠재력, 실시계획, 예상되는 효과와 이익을 중요항목으로 하며, 각 항의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	배 점
농업생산자원	20
이용가능한 경관자원	15
입지조건	15
농민수	15
이용가능한 면적	10
경영주체	7
공공성 및 서비스성 설비와 투자능력	7
협력의지	6
예상 여행객 수	5
합 계	100

■ 보조한도액

- 각 휴한농업의 보조한도액은 앞 항의 평가결과 및 성적에 의거하여, 일반지도지역과 중점지도지역으로 구분한다.
 - 보조한도액은 당해 예산의 한도 내에서 검토하는데, 농업위원회 주임 위원(우리나라의 농림부장관에 해당)의 승인 사항이다. 평점 60점 이하는 보조 대상에서 제외한다.
- 보조비율
 - 농어민이 경영하는 휴한농업은, 농업경영설비 보조 70%, 공공설비 보조 50%, 서비스성 설비 30%를 상한선으로 한다. 단, 산간벽지의 농어민이 경영하는 휴한농업의 서비스성 설비는 50%를 상한선으로 한다.
 - 농회, 어(漁)회, 농어업협작사, 협작농장 등이 경영한 휴한농업은, 농업경영설비 보조는 70%를 상한선으로 하며, 공공성 및 서비스성 설비는 30%를 상한선으로 한다.
- 제2차년도에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휴한농업 보조는 계획설계안의 전체적인 발전과 재무수요, 당해연도의 투자경비상황 및 전년의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앞 항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동일한 휴한농업에 대한 보조는 3회로 제한하며, 총 보조금액은 4,000만NT\$를 상한선으로 한다.

■ 보조금사용 및 관리

- 농업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휴한농업 보조안건은 각 현·시 정부에 통지하여 건설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 휴한농업 경영 주체는 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며,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면 신청한 보조금 지급을 유보한다. 보류기간은 최고 1년으로 하며, 1년이 초과되면 보조는 취소된다.

- 휴한농업은 심사를 통하여 보조가 승인된 이후, 세부계획에 의거하여 개인부담금으로 재료를 구입하여 공사를 시작하는데, 공정이 반정도 진행된 시점에 근거서류를 유관기관에 보내 보조금을 신청한다.

■ 관리감독

- 보조금을 수령한 휴한농업과 관계 있는 각 항의 건설 행위는 관련법령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본회의 보조금을 수령한 휴한농업의 각종 사용시설은 용도전환 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회수한다.
- 현정부는 3개월마다 한번씩 공사 감독 보고회를 거행하며, 공사진행사항 및 경영관리상황을 연구하고 토론한다. 또한 규정된 시간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한 각 항의 시설사용현황을 추적조사하며, 보조금을 받은 휴한농업 경영주체는 분기별로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한다.

D172

외국의 농촌관광 정책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03. 2.

발 행 2003. 2.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http : //www.krei.re.kr](http://www.krei.re.kr)

인쇄처 (주) 문원사 02-739-3911~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